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-1915호

# 인천광역시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및 조정안 마련에 대한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·공고

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「문화유산법」) 제13조,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「자연유산법」) 제10조 및 「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 제24조, 「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 제22조 등에 따라 기고시되어 운영 중인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대하여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 및 현지 여건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[붙임 1]과 같이 허용기준을 작성 및 조정하고자,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조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주민과 이해관계자 등은 공고기간 내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 또는 관할 구·군 문화유산 관련부서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. 8. 18.

**인천광역시장**

1. **대상유산** : 인천광역시 소재 시지정유산 34개소(허용기준 29건)

| 연번 | 고시 | 종목 | 유산명 | 구·군 | 상세주소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1 | 기념물 | 삼목도 선사 유적 | 중구 | 중구 운서동 1830-1번지 등 / 40필지 |
| 2 | 2 | 문화유산자료 | 남북동 조병수 가옥 | | 중구 용유로380번길 21 |
| 3 | 3 | 유형문화유산 | 인천도호부 관아 | 미추홀구 | 미추홀구 문학동 343-2 |
| 4 | | 유형문화유산 | 인천향교 | | 미추홀구 문학동 349-2 외 |
| 5 | 4 | 기념물 | 문학산성 | | 미추홀구 문학동 164-69 |
| 6 | 5 | 기념물 | 이윤생·부인 강씨 정려 | | 미추홀구 용현동 442 |
| 7 | 6 | 유형문화유산 | 논현포대 | 남동구 | 남동구 논현동 648-1 |
| 8 | 7 | 기념물 | 김재로 묘 | | 남동구 운연동 산64-13 |
| 9 | 8 | 기념물 | 월성박씨 종중 묘역 | | 남동구 서창동 산29-17 |
| 10 | 9 | 문화유산자료 | 장도포대 터 | | 남동구 논현동 111-13 외 |
| 11 | 10 | 기념물 | 이찰·이율 형제 정려 | 계양구 | 계양구 갈현동 산73-6 |
| 12 | 11 | 기념물 | 이선봉 묘역 | | 계양구 동양동 152-5 |
| 13 | 12 | 유형문화유산 | 심즙 신도비 | 서구 | 서구 공촌동 산8 |
| 14 | 13 | 기념물 | 류사눌 묘 | | 서구 경서동 산200-1 |
| 15 | 14 | 기념물 | 대곡동 고인돌군 | | 서구 대곡로 356 |
| 16 | | 기념물 | 평산신씨 종중 묘역 | | 서구 대곡로368번안길 11 |
| 17 | 15 | 기념물 | 반남박씨 대종중 묘역 | | 서구 대곡동 213-9 |
| 18 | 16 | 기념물 | 김안정 묘 및 묘비 | | 서구 원당동 810-10 |

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9 | 17 | 유형문화유산 | 강화 보문사 석실 | 강화군 | 강화군 삼산남로828번길 44 외 |
| 20 | | 자연유산 | 강화 보문사 향나무 | | 강화군 삼산남로828번길 44 |
| 21 | | 민속문화유산 | 강화 보문사 맷돌 | | 강화군 삼산남로828번길 44 |
| 22 | 18 | 유형문화유산 | 강화 삼암돈대 | |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산223-4 외 |
| 23 | 19 | 유형문화유산 | 강화 적석사 사적비 | |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산74 |
| 24 | | 기념물 | 강화 고천리 고인돌군 | |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산96 외 |
| 25 | 20 | 기념물 | 이규보 묘 | | 강화군 길상면 길직리 산115 |
| 26 | 21 | 기념물 | 강화 봉천대 | | 강화군 하점면 신봉리 산63 |
| 27 | 22 | 기념물 | 강화 계룡돈대 | | 강화군 내가면 황청리 282 |
| 28 | 23 | 기념물 | 강화 참성단 천재궁 터 | | 강화군 화도면 문산리 산64-1 외 |
| 29 | 24 | 기념물 | 허유전 묘 | |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산297 |
| 30 | 25 | 기념물 | 강화 인산리 석실분 | |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71 외 |
| 31 | 26 | 기념물 | 강화 건평돈대 | |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산39 |
| 32 | 27 | 문화유산자료 | 강화 원층사 터 | | 강화군 하점면 이강리 산177 |
| 33 | 28 | 문화유산자료 | 강화 망월돈대 | | 강화군 하점면 망월리 2107 외 |
| 34 | 29 | 문화유산자료 | 강화 무태돈대 | |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산151-4 외 |

**2. 조정사유**

ㅇ 「문화유산법」 제13조, 「자연유산법」 제10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명시화함에 따라, 시지정 유산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수립하여 유산 주변 건축행위의 범위를 사전에 고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

※ 본 공고 내용은 조정(안)이며, 20일간 주민의견을 청취 후 의견을 수렴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최종고시할 예정임

**3. 조정내용** : [붙임 1]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및 조정(안) 참고

**4. 공고기간** : 2025. 8. 18. ~ 2025. 9. 7.(21일간)

**5. 허용기준 마련에 따른 업무처리**

ㅇ 허용기준 내 건설공사(건축 및 개발행위) :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약식 영향진단을 생략하고 각 군·구 국가유산 관련부서(국가유산과, 문화관광과 등) 협의를 거쳐 처리

ㅇ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설공사(건축 및 개발행위) : 약식영향진단 또는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 결정

6. 의견제출

ㅇ **제출기간** : 공고기간 만료일(2025년 9월 7일) 18:00까지

ㅇ **제출방법** : 서면제출([붙임 2] 의견서 이용)

-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방문 또는 우편접수 또는 이메일(bjs5467@korea.kr) 제출

  ※ 공고기간 만료일 도착분에 한함(2025년 9월 7일 18:00까지)

- 성명(법인 또는 단체명, 그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 및 주소 기재

ㅇ **제출장소**

- 방문 : 시청 문화유산과 또는 해당 국가유산이 있는 군·구 문화유산 관련부서

| 연번 | 시·구·군 | 부서명 | 주 소 | 연락처 |
|---|---|---|---|---|
| 1 | 인천시 | 문화유산과 |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(구월동), 신관 9층 | 032-440-4032 |
| 2 | 중구 | 문화관광과 |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, 제1청사 동별관 1층 | 032-760-6474 |
| 3 | 미추홀구 | 문화예술과 |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(숭의동), 본관1청사 3층 | 032-880-7973 |
| 4 | 남동구 | 문화관광과 |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33(만수동), 본관 6층 | 032-453-2133 |
| 5 | 계양구 | 문화체육관광과 |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, 4층 | 032-450-5824 |
| 6 | 서구 | 문화관광체육과 |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(심곡동, 서구청 제2청사), 13층 | 032-560-5932 |
| 7 | 강화군 | 국가유산과 |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, 지킴이센터 3층 | 032-930-3907 |

- 우편 : (21555)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(구월동) 인천시청 신관 9층,
  문화유산과 유산보호팀

※ 문의처 :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국 문화유산과 유산보호팀(☎032-440-4032)

7. 기타사항

ㅇ 본 허용기준 조정(안)은 최종 확정안이 아니라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전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(수렴)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심의과정을 거쳐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**붙임** 1.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및 조정(안) 1부.

2.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및 조정(안) 의견서 1부.

끝.

[붙임 1]

#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(안)

## 6. 강화군

### ■ 강화 보문사 석실 외 2개소

| 구분 | 기고시(2021.07.07.) | 허용기준 조정(안) |
|---|---|---|
| 고시도 |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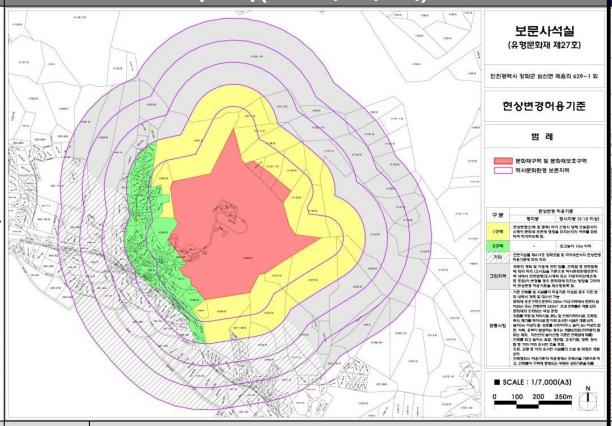 |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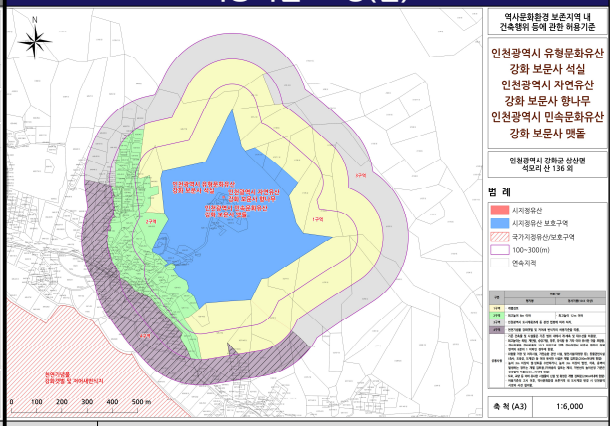 |





| 고시문 | 구분 | 허용기준 | | 구분 | 허용기준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평지붕 | 경사지붕(3:10 이상) | | 평지붕 | 경사지붕(10:3 이상) |
| | 1구역 | ◦ 현상변경(신축 및 증축) 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하도록 함 | | 1구역 | ◦ 개별검토 | |
| | 2구역 | - | ◦ 최고높이 10m 이하 | 2구역 | ◦ 최고높이 8m 이하 | ◦ 최고높이 12m 이하 |
| | 그 외 지역 | 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br>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. | | 3구역 | 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 | |
| | 기타 | ◦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| | 4구역 | ◦ 천연기념물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의 허용기준을 따름. | |
| | 공통 사항 | 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.<br>◦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<br>◦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.<br>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.<br>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 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br>◦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br>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.<br>◦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| | 공통 사항 | 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<br>◦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<br>◦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 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<br>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<br>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 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 이내에 한함)<br>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<br>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 | |

## 허용기준 조정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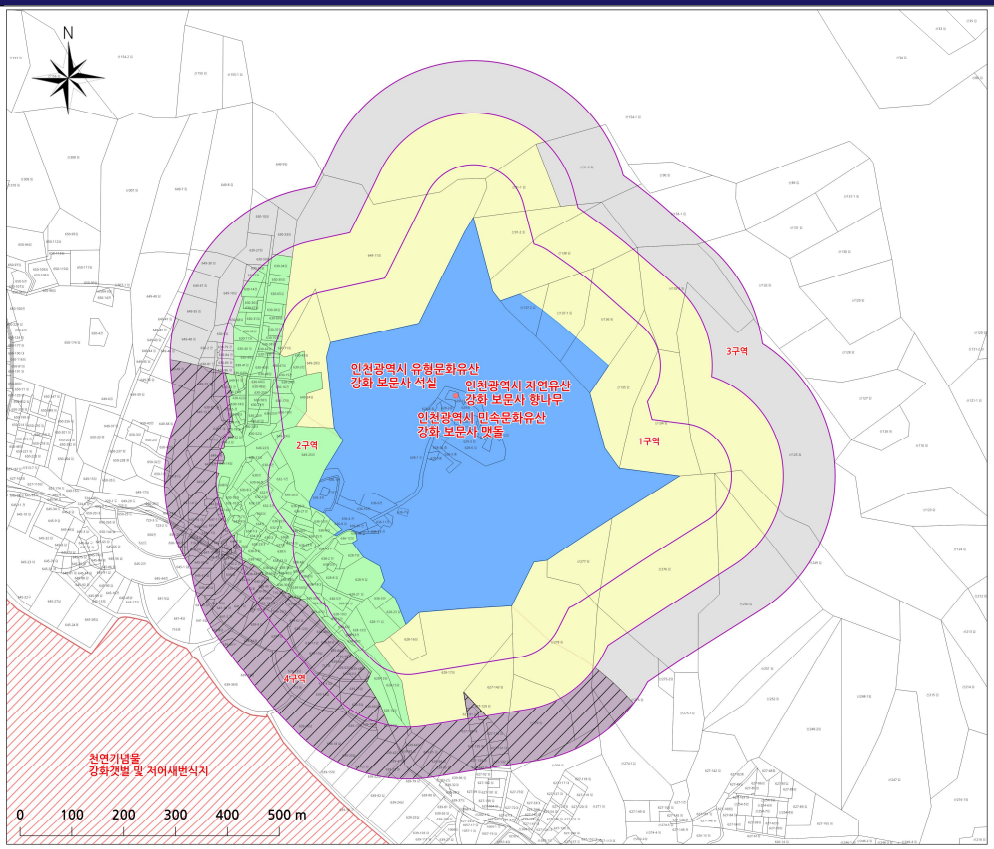
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**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**
**강화 보문사 석실**
**인천광역시 자연유산**
**강화 보문사 향나무**
**인천광역시 민속문화유산**
**강화 보문사 맷돌**

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
석모리 산 136 외

### 범 례

- 시지정유산
- 시지정유산 보호구역
- 국가지정유산/보호구역
- 100~300(m)
- 연속지적

| 구분 | 허용기준 | |
|---|---|---|
| | 현지정 | 경사지붕(10:3 이상) |
| 1구역 | · 개별검토 | |
| 2구역 | · 최고높이 8m 이하 | · 최고높이 12m 이하 |
| 3구역 | ·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 | |
| 4구역 | · 천연기념물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의 허용기준을 따름. | |
| 공통사항 | ·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<br>· 최고높이는 목조, 계단탑, 승강기탑, 장벽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<br>·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상목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<br>·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<br>·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옹벽, 석축, 콩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(지하층이 없는는 계획, 지반선이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이내에 한함)<br>· 도로, 교량 등 이외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<br>·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접광역 시경과 사전 협의함. | |

| 축 척 (A3) | 1:6,000 |
|---|---|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## 허용기준 조정(안) 위성영상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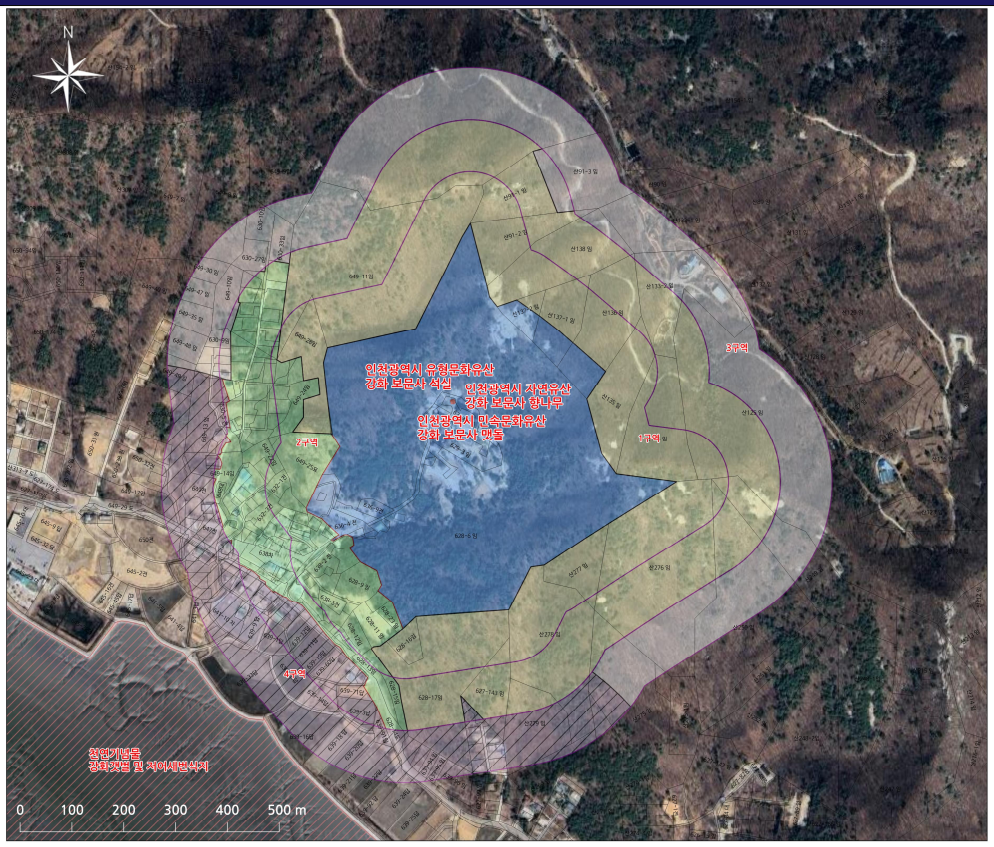
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**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**
**강화 보문사 석실**
**인천광역시 자연유산**
**강화 보문사 향나무**
**인천광역시 민속문화유산**
**강화 보문사 맷돌**

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
석모리 산 136 외

### 범 례

- 시지정유산
- 시지정유산 보호구역
- 국가지정유산/보호구역
- 100~300(m)
- 연속지적

| 구분 | 허용기준 | |
|---|---|---|
| | 현지정 | 경사지붕(10:3 이상) |
| 1구역 | · 개별검토 | |
| 2구역 | · 최고높이 8m 이하 | · 최고높이 12m 이하 |
| 3구역 | ·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 | |
| 4구역 | · 천연기념물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의 허용기준을 따름. | |
| 공통사항 | ·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<br>· 최고높이는 목조, 계단탑, 승강기탑, 장벽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<br>·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상목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<br>·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<br>·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옹벽, 석축, 콩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(지하층이 없는는 계획, 지반선이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이내에 한함)<br>· 도로, 교량 등 이외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<br>·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접광역 시경과 사전 협의함. | |

| 축 척 (A3) | 1:6,000 |
|---|---|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## ■ 강화 삼암돈대

| 구분 | 기고시(2021.07.07.) | 허용기준 조정(안) |
|---|---|---|
| 고시도 |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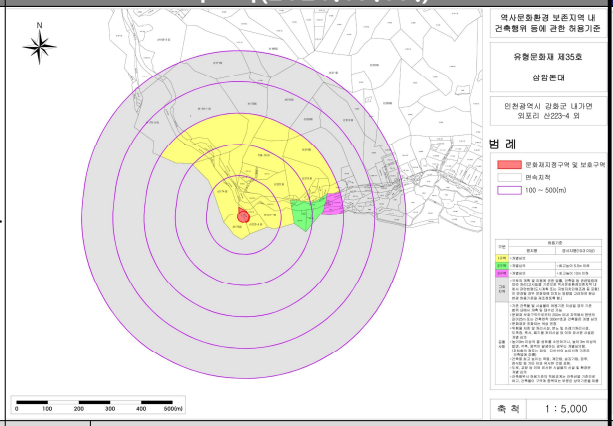 |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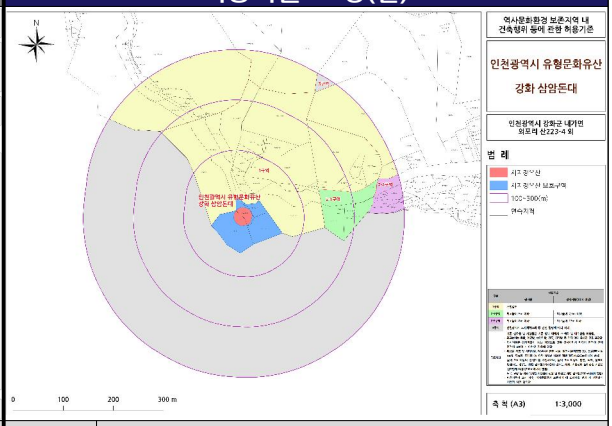 |

| 고시문 | 구분 | 허용기준 | | 구분 | 허용기준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평지붕 | 경사지붕(3:10 이상) | | 평지붕 | 경사지붕(10:3 이상) |
| | 1구역 | ◦ 개별심의 | | 1구역 | ◦ 개별검토 | |
| | 2구역 | ◦ 개별심의 | ◦ 최고높이 5.5m 이하 | 2-1구역 | ◦ 최고높이 5m 이하 | ◦ 최고높이 7.5m 이하 |
| | 3구역 | ◦ 개별심의 | ◦ 최고높이 13m 이하 | 2-2구역 | ◦ 최고높이 8m 이하 | ◦ 최고높이 12m 이하 |
| | 그 외 지역 | 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br>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. | | 3구역 | 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 | |
| | 공통 사항 | 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.<br>◦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<br>◦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.<br>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.<br>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<br>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br>◦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br>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.<br>◦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| | 공통 사항 | 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<br>◦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<br>◦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<br>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<br>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<br>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 이내에 한함)<br>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<br>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 | |

## 허용기준 조정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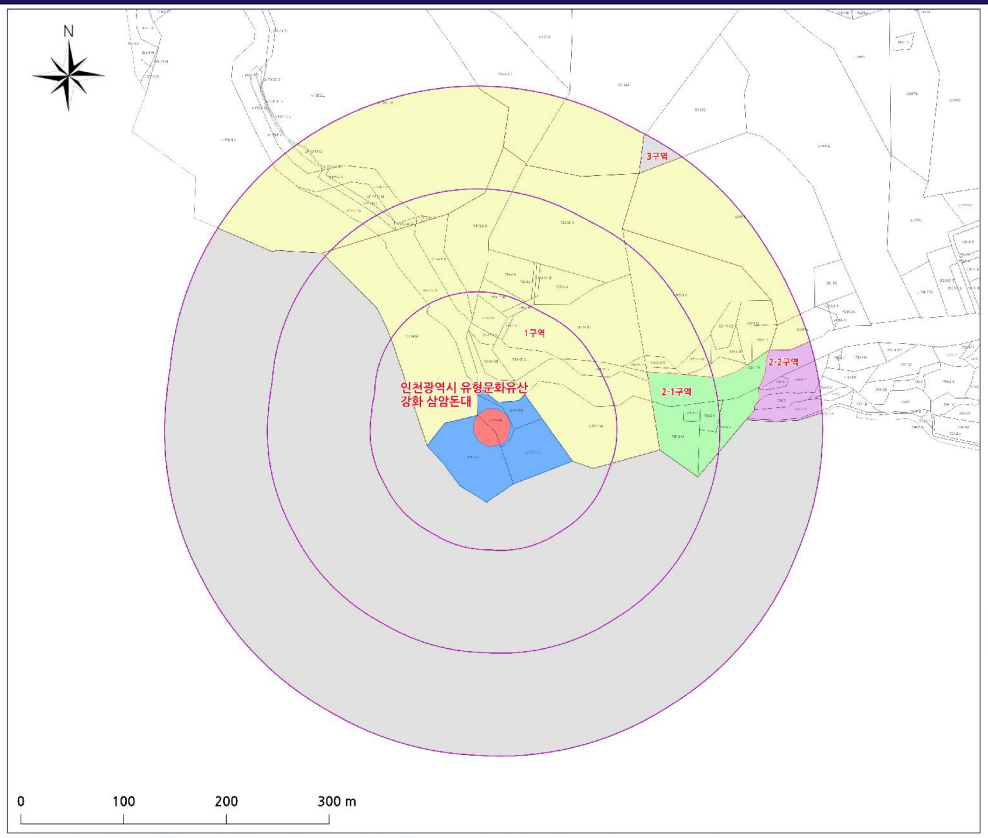
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**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**

**강화 삼암돈대**

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
외포리 산223-4 외

### 범 례

- 시지정유산
- 시지정유산 보호구역
- 100~300(m)
- 연속지적

| 구분 | 허용기준 | |
|---|---|---|
| | 원지형 | 경사지형(10:3 이상) |
| 1구역 | · 개별검토. | |
| 2-1구역 | · 최고높이 5m 이하 | · 최고높이 7.5m 이하. |
| 2-2구역 | · 최고높이 8m 이하 | · 최고높이 12m 이하 |
| 3구역 | ·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 | |
| 공통사항 | ·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형태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한.<br>·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냉첨, 굴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건물 포함임.<br>· 경사지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지역사 비경사 전체의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<br>·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송배전변전시설 (소내, 도로변, 도계변) 등 기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<br>·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벽면, 석축, 생태옹벽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 필요(지하층이 없으는 계획, 지반선에 높이산정 기준은 인접한에 하중(200m이내에 한함)<br>· 토지, 과랑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파랑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<br>·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전환경 시설과 사전 협의함. | |

| 축 척 (A3) | 1:3,000 |
|---|---|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## 허용기준 조정(안) 위성영상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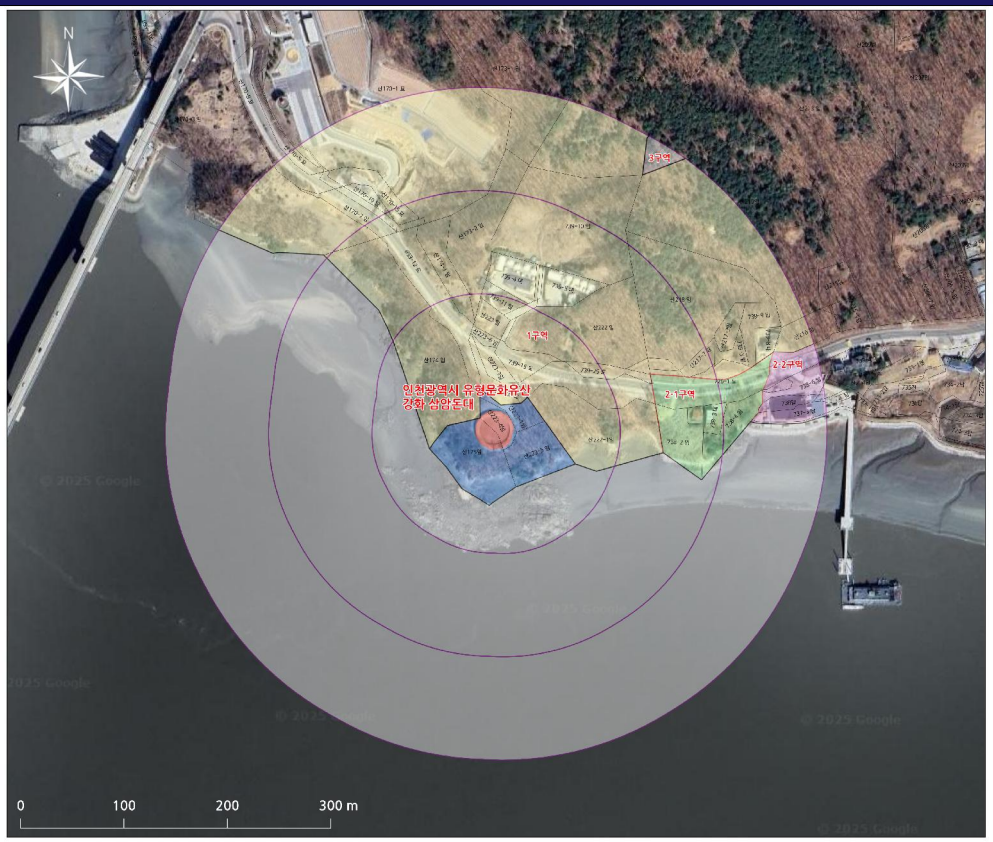
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**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**

**강화 삼암돈대**

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
외포리 산223-4 외

### 범 례

- 시지정유산
- 시지정유산 보호구역
- 100~300(m)
- 연속지적

| 구분 | 허용기준 | |
|---|---|---|
| | 원지형 | 경사지형(10:3 이상) |
| 1구역 | · 개별검토. | |
| 2-1구역 | · 최고높이 5m 이하 | · 최고높이 7.5m 이하 |
| 2-2구역 | · 최고높이 8m 이하 | · 최고높이 12m 이하 |
| 3구역 | ·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 | |
| 공통사항 | ·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형태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한.<br>·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냉첨, 굴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건물 포함임.<br>· 경사지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지역사 비경사 전체의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<br>·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송배전변전시설 (소내, 도로변, 도계변) 등 기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<br>·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벽면, 석축, 생태옹벽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 필요(지하층이 없으는 계획, 지반선에 높이산정 기준은 인접한에 하중(200m이내에 한함)<br>· 토지, 과랑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파랑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<br>·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전환경 시설과 사전 협의함. | |

| 축 척 (A3) | 1:3,000 |
|---|---|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## ■ 강화 적석사 사적비 외 2개소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 colspan="3">기고시(2015.09.07.)</th><th colspan="3">기고시(2021.07.07.)</th></tr>
<tr><td>고시도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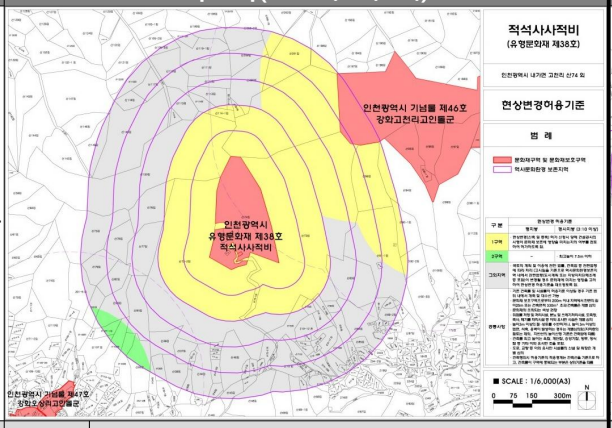
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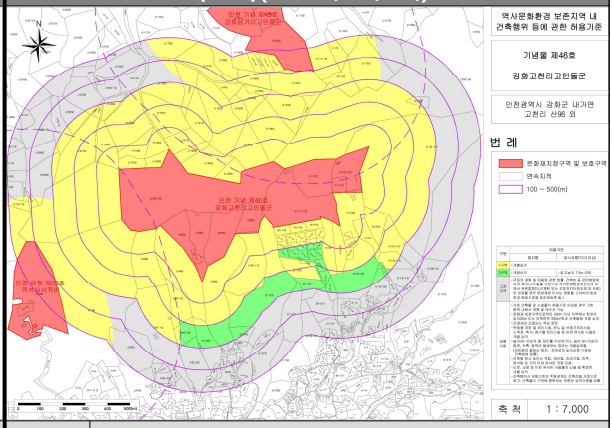
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고시문</td><td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td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/tr>
<tr><td>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3:10 이상)</td><td>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10:3 이상)</td></tr>
<tr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현상변경(신축 및 증축) 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하도록 함</td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개별심의</td></tr>
<tr><td>2구역</td><td>-</td><td>◦ 최고높이 7.5m 이하</td><td>2구역</td><td>◦ 개별심의</td><td>◦ 최고높이 7.5m 이하</td></tr>
<tr><td>그 외 지역</td><td colspan="2">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br>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.</td><td>그 외 지역</td><td colspan="2">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br>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.</td></tr>
<tr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.<br>◦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<br>◦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.<br>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.<br>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 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br>◦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br>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.<br>◦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</td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.<br>◦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<br>◦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.<br>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.<br>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 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br>◦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br>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.<br>◦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기고시(2024.06.10.)</th><th>허용기준 조정(안)</th></tr>
<tr><td>고시도</td><td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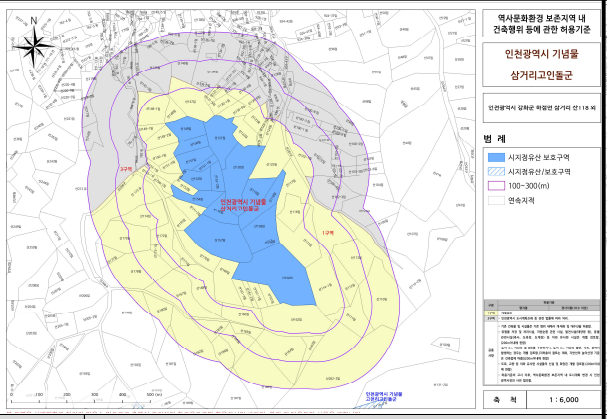
</td><td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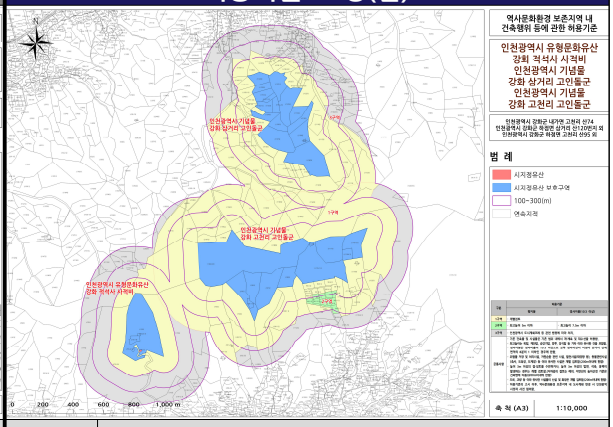
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고시문</td><td>구분</td><td>허용기준</td><td>구분</td><td>허용기준</td></tr>
<tr><td></td><td>평지붕 | 경사지붕(3:10 이상)</td><td></td><td>평지붕 | 경사지붕(10:3 이상)</td></tr>
<tr><td>1구역</td><td>◦ 개별검토</td><td>1구역<br>2구역</td><td>◦ 개별검토<br>◦ 최고높이 5m 이하 | ◦ 최고높이 7.5m 이하</td></tr>
<tr><td>3구역</td><td>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/td><td>3구역</td><td>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/td></tr>
<tr><td>공통사항</td><td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<br>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<br>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<br>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이내에 한함)<br>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<br>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</td><td>공통사항</td><td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<br>◦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<br>◦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<br>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<br>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<br>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 이내에 한함)<br>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<br>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</td></tr>
</table>

## 허용기준 조정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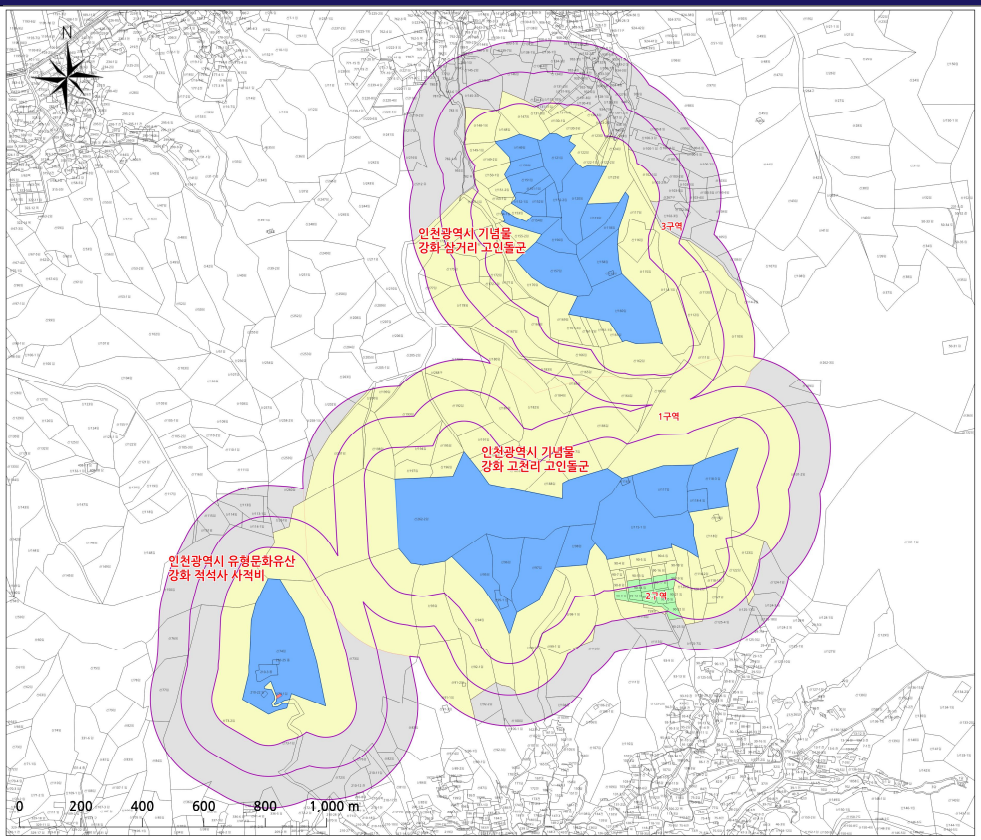


**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**

**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강화 적석사 사적비 / 인천광역시 기념물 강화 삼거리 고인돌군 / 인천광역시 기념물 강화 고천리 고인돌군**

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산74
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삼거리 산120번지 외
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고천리 산95 외

### 범 례

- 시지정유산
- 시지정유산 보호구역
- 100~300(m)
- 연속지적

| 구분 | 허용기준 | |
|---|---|---|
| | 원지봉 | 경사지봉(10:3 이상) |
| 1구역 | · 개별검토 | |
| 2구역 | · 최고높이 5m 이하 | · 최고높이 7.5m 이하 |
| 3구역 | ·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 | |
| 공통사항 | ·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법위 내에서 개축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<br>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양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<br>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지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<br>하림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저탄소관 관련 시설, 발전시설(재생발전 등), 등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(200m이내에 한함)<br>높이 3m 이상의 및 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(지하층이 접하는 계획, 지반선이 높이신장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이내에 한함)<br>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<br>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 | |

| 축 척 (A3) | 1:10,000 |
|---|---|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## 허용기준 조정(안) 위성영상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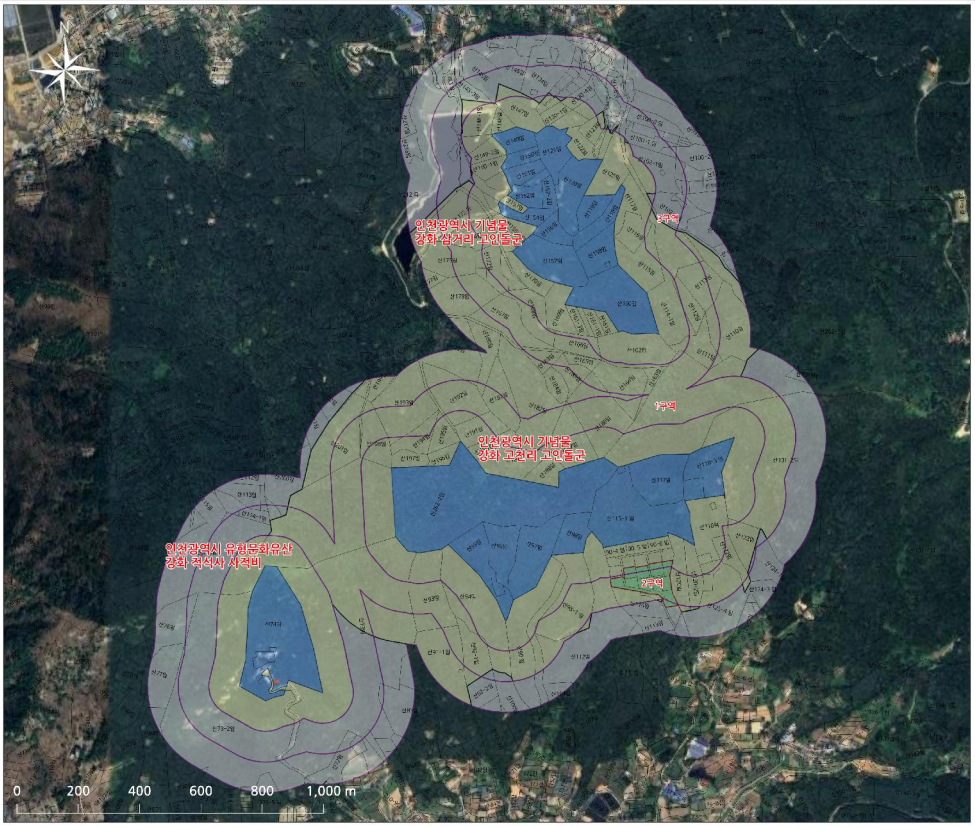


**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**

**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강화 적석사 사적비 / 인천광역시 기념물 강화 삼거리 고인돌군 / 인천광역시 기념물 강화 고천리 고인돌군**

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산74
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삼거리 산120번지 외
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고천리 산95 외

### 범 례

- 시지정유산
- 시지정유산 보호구역
- 100~300(m)
- 연속지적

| 구분 | 허용기준 | |
|---|---|---|
| | 원지봉 | 경사지봉(10:3 이상) |
| 1구역 | · 개별검토 | |
| 2구역 | · 최고높이 5m 이하 | · 최고높이 7.5m 이하 |
| 3구역 | ·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 | |
| 공통사항 | ·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법위 내에서 개축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<br>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양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<br>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지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<br>하림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저탄소관 관련 시설, 발전시설(재생발전 등), 등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(200m이내에 한함)<br>높이 3m 이상의 및 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(지하층이 접하는 계획, 지반선이 높이신장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이내에 한함)<br>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<br>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 | |

| 축 척 (A3) | 1:10,000 |
|---|---|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## ■ 이규보 묘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 colspan="3">기고시(2010.04.14.)</th><th colspan="3">허용기준 조정(안)</th></tr>
<tr><td>고시도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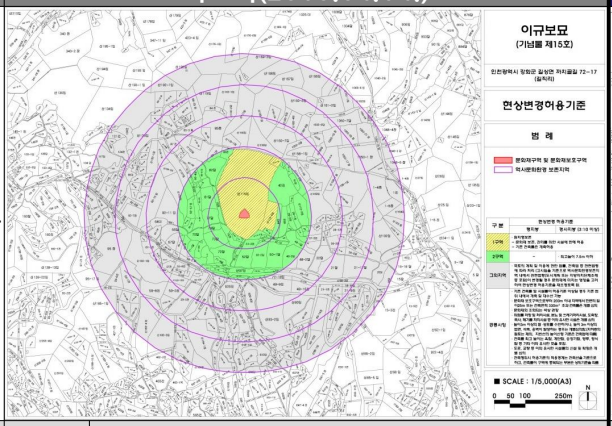
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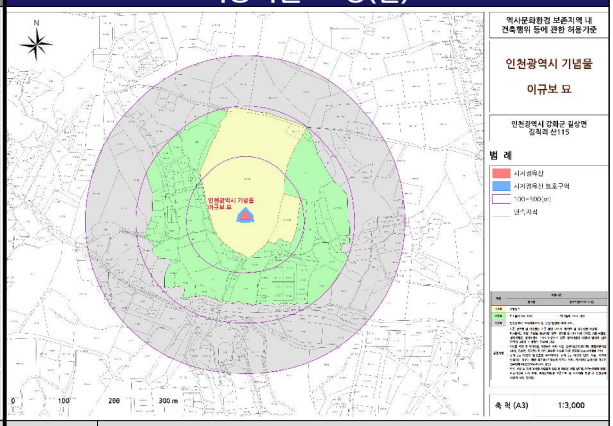
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고시문</td><td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td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/tr>
<tr><td>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3:10 이상)</td><td>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10:3 이상)</td></tr>
<tr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원지형보존<br>- 문화재 보존·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<br>- 기존 건축물은 개축허용</td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개별검토</td></tr>
<tr><td>2구역</td><td>-</td><td>◦ 최고높이 7.5m 이하</td><td>2구역</td><td>◦ 최고높이 5m 이하</td><td>◦ 최고높이 7.5m 이하</td></tr>
<tr><td>그 외 지역</td><td colspan="2">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br>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.</td><td>3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/td></tr>
<tr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.<br>◦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<br>◦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.<br>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.<br>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<br>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br>◦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br>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.<br>◦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</td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<br>◦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<br>◦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<br>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<br>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<br>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 이내에 한함)<br>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<br>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</td></tr>
</table>

## 허용기준 조정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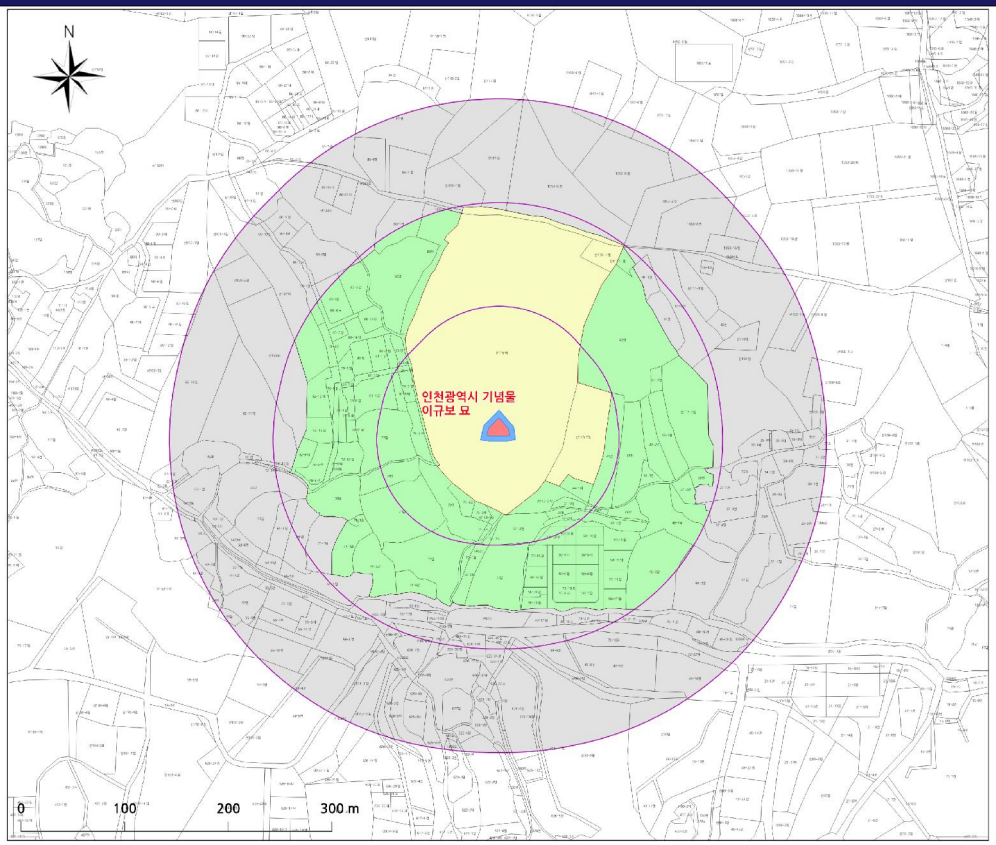
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**인천광역시 기념물**

**이규보 묘**

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
길직리 산115

### 범 례

- 시지정유산
- 시지정유산 보호구역
- 100~300(m)
- 연속지적

| 구분 | 허용기준 | |
|---|---|---|
| | 행위명 | 경사지붕(10:3 이상) |
| 1구역 | 개별검토 | |
| 2구역 | 최고높이 8m 이하 | 최고높이 12m 이하 |
| 3구역 |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 | |
| 공통사항 |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법의 내에서 개축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<br>최고높이는 적법 개건법, 송전기반, 장례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<br>경사지붕은 경사지붕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지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<br>위험물 제조 및 저장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방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.(200m이내에 한함)<br>높이 3m 이상의 절 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기타항목이 없는는 제외).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른(200m이내에 한함)<br>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<br>이용가준이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 | |

| 축 척 (A3) | 1:3,000 |
|---|---|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## 허용기준 조정(안) 위성영상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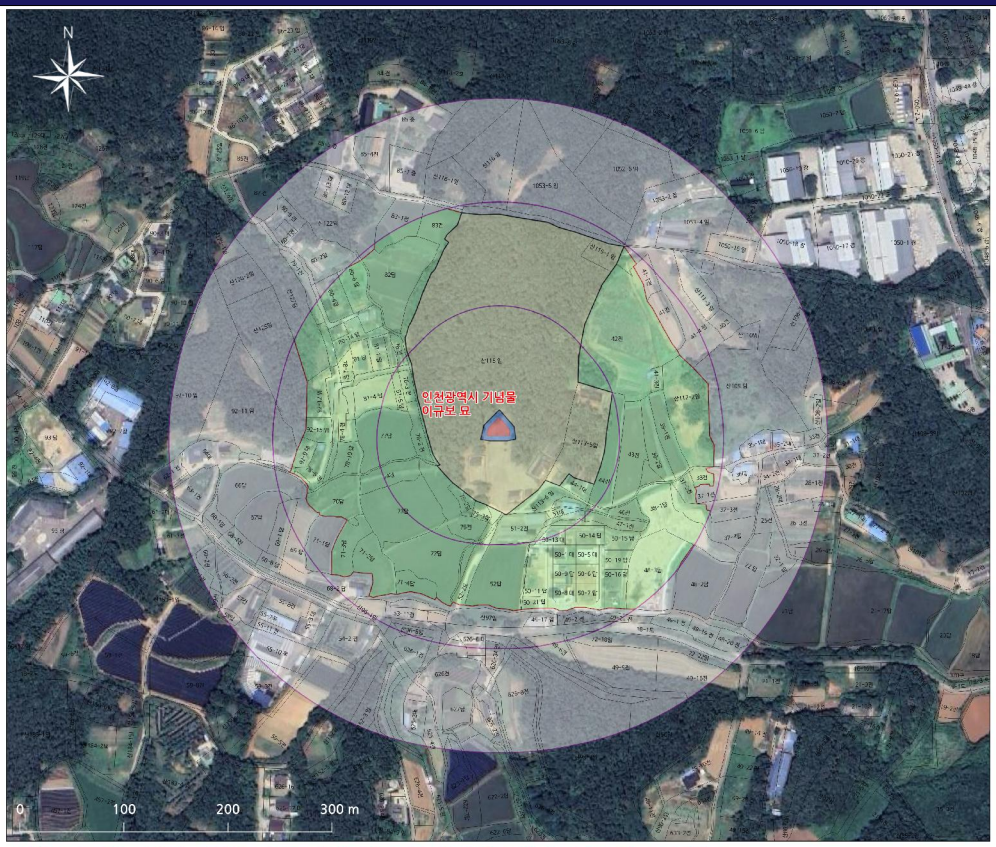
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**인천광역시 기념물**

**이규보 묘**

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
길직리 산115

### 범 례

- 시지정유산
- 시지정유산보호구역
- 100~300(m)
- 연속지적

| 구분 | 허용기준 | |
|---|---|---|
| | 행위명 | 경사지붕(10:3 이상) |
| 1구역 | 개별검토 | |
| 2구역 | 최고높이 8m 이하 | 최고높이 12m 이하 |
| 3구역 |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 | |
| 공통사항 |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법의 내에서 개축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<br>최고높이는 적법 개건법, 송전기반, 장례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<br>경사지붕은 경사지붕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지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<br>위험물 제조 및 저장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방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<br>높이 3m 이상의 절 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기타항목이 없는는 제외).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른(200m이내에 한함)<br>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<br>이용가준이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 | |

| 축 척 (A3) | 1:3,000 |
|---|---|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## ■ 강화 봉천대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 colspan="3">기고시(2017.01.16.)</th><th colspan="3">허용기준 조정(안)</th></tr>
<tr><td>고시도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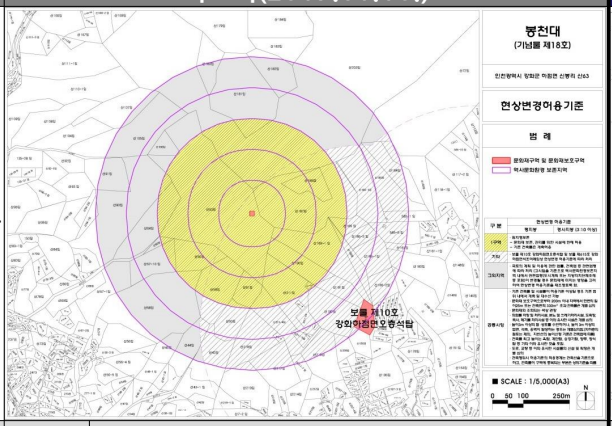
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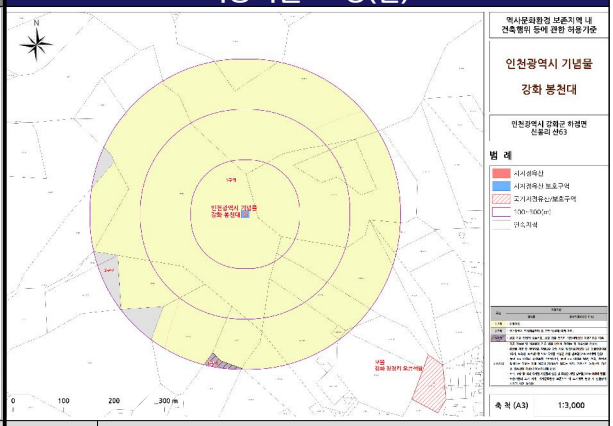
</td></tr>
<tr><td rowspan="6">고시문</td><td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td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/tr>
<tr><td>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3:10 이상)</td><td>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10:3 이상)</td></tr>
<tr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원지형보존<br>- 문화재 보존·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<br>- 기존 건축물은 개축허용</td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개별검토</td></tr>
<tr><td>그 외 지역</td><td colspan="2">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br>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.</td><td>3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/td></tr>
<tr><td>기타</td><td colspan="2">◦ 보물 제10호 강화하점면오층석탑및 보물 제615호 강화하점면석조여래입상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</td><td>4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보물강화 장정리 오층석탑, 보물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허용기준을 따름.</td></tr>
<tr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.<br>◦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<br>◦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.<br>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.<br>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<br>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br>◦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br>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.<br>◦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</td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<br>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<br>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<br>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 이내에 한함)<br>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<br>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</td></tr>
</table>

## 허용기준 조정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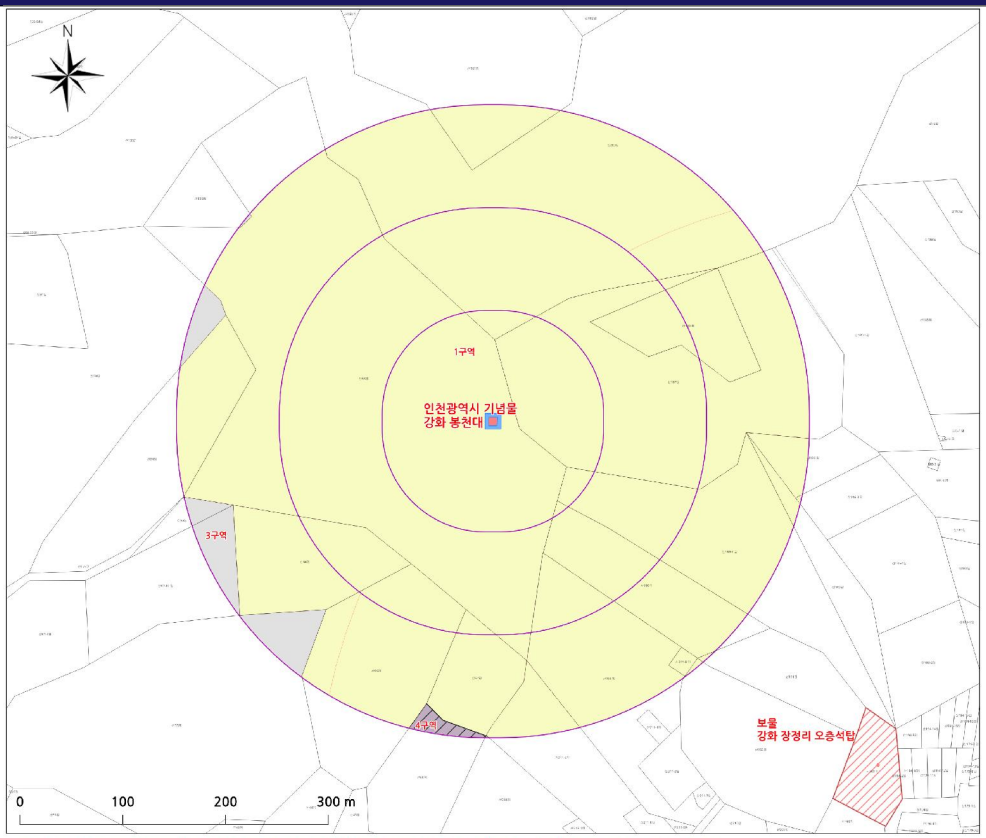
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**인천광역시 기념물**

**강화 봉천대**

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
신봉리 산63

### 범 례

- 시지정유산
- 시지정유산 보호구역
- 국가지정유산/보호구역
- 100~300(m)
- 연속지적

| 구분 | 허용기준 | |
|---|---|---|
| | 행위명 | 영사기본(10.3 이상) |
| 1구역 | · 개별법도 | |
| 3구역 | ·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. | |
| 4구역 | · 보물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, 보물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허용기준을 따름. | |
| 공통사항 | ·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하여 및 대수선을 허용함.<br>·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가축수용 관련 시설, 발전시설(재생에너지 등), 도축장(부산시설 (축사)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결정토 (2000㎡이하)에 한함.<br>·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옹벽, 석축, 흙막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(지하층이 없는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선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이내에 한함)<br>· 도로, 광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<br>·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 | |

| 축 척 (A3) | 1:3,000 |
|---|---|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## 허용기준 조정(안) 위성영상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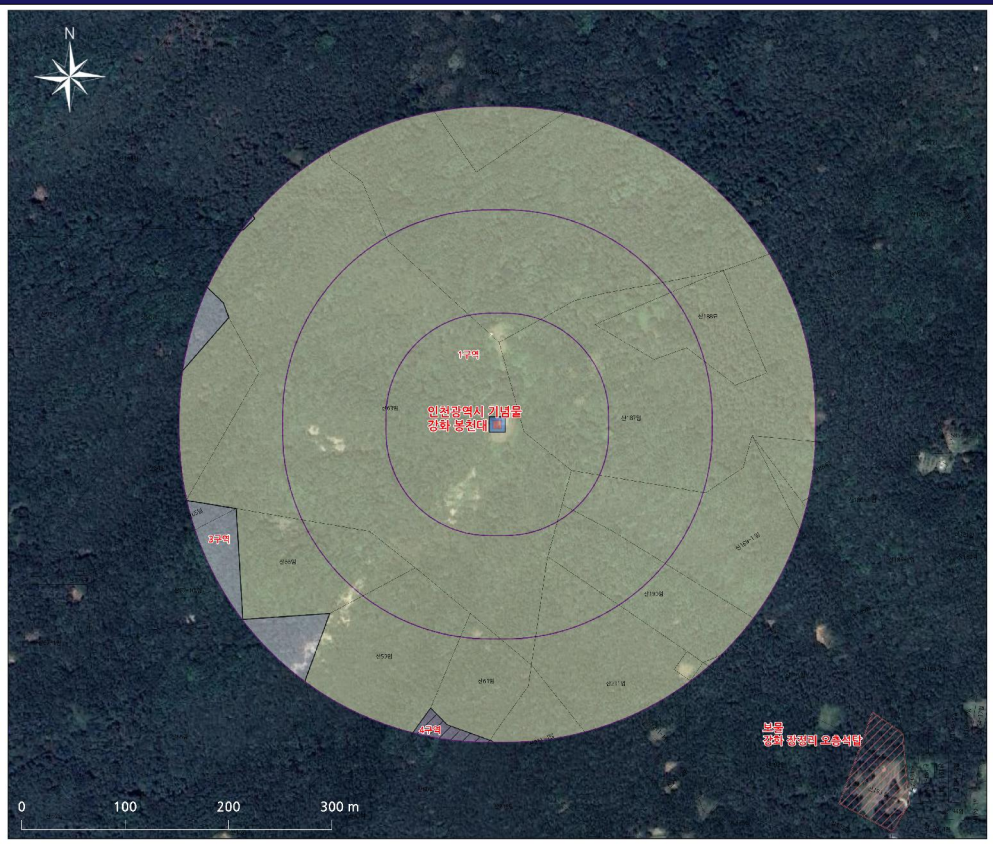
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**인천광역시 기념물**

**강화 봉천대**

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
신봉리 산63

### 범 례

- 시지정유산
- 시지정유산보호구역
- 국가지정유산
- 100~300(m)
- 연속지적

| 구분 | 허용기준 | |
|---|---|---|
| | 행위명 | 영사기본(10.3 이상) |
| 1구역 | · 개별법도 | |
| 3구역 | ·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. | |
| 4구역 | · 보물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, 보물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허용기준을 따름. | |
| 공통사항 | ·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하여 및 대수선을 허용함.<br>·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가축수용 관련 시설, 발전시설(재생에너지 등), 도축장(부산시설 (축사)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결정토 (2000㎡이하)에 한함.<br>·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옹벽, 석축, 흙막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(지하층이 없는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선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이내에 한함)<br>· 도로, 광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<br>·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 | |

| 축 척 (A3) | 1:3,000 |
|---|---|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## ■ 강화 계룡돈대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 colspan="3">기고시(2017.07.07.)</th><th colspan="3">허용기준 조정(안)</th></tr>
<tr><td>고시도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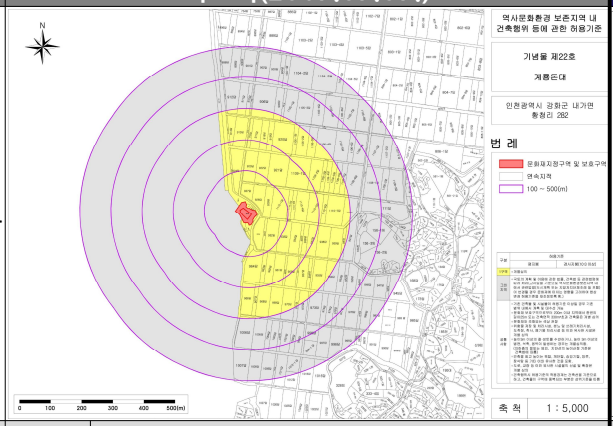
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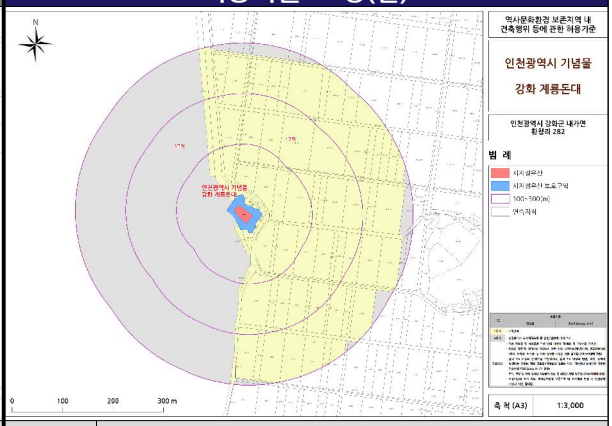
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고시문</td><td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td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/tr>
<tr><td>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3:10 이상)</td><td>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10:3 이상)</td></tr>
<tr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개별심의</td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개별검토</td></tr>
<tr><td>그 외 지역</td><td colspan="2">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br>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 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.</td><td>3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/td></tr>
<tr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.<br>◦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<br>◦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.<br>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.<br>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<br>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br>◦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br>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.<br>◦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</td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<br>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<br>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<br>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 이내에 한함)<br>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<br>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</td></tr>
</table>

## 허용기준 조정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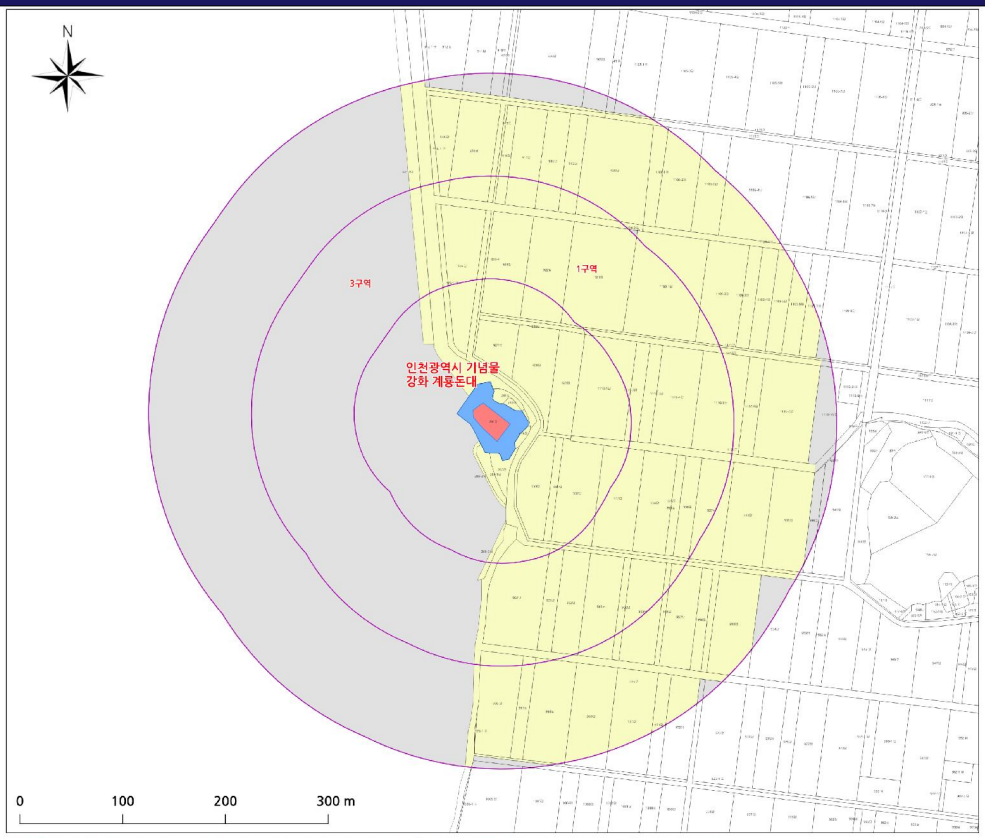
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**인천광역시 기념물**

**강화 계룡돈대**

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
황청리 282

**범 례**

- 시지정유산
- 시지정유산 보호구역
- 100~300(m)
- 연속지적

| 구분 | 허용기준 | |
|---|---|---|
| | 행지동 | 정사각형(10:3 이상) |
| 1구역 | · 개별검토 | |
| 3구역 | ·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 | |
| 공통사항 | ·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개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<br>·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저탄소성 관련 시설, 발전시설(재정량 등), 등물관리시설(송서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미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토록(2000m이내에 한함)<br>·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중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결부장(지하층이 없는는 계획, 기반선이 높아산장 기준은 건축한계 이내(200m이내에 한함)<br>도로, 교량 등 이미 유사한 시설물이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결부심(200m이내에 한함)<br>· 허용기준이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 | |

| 축 척 (A3) | 1:3,000 |
|---|---|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## 허용기준 조정(안) 위성영상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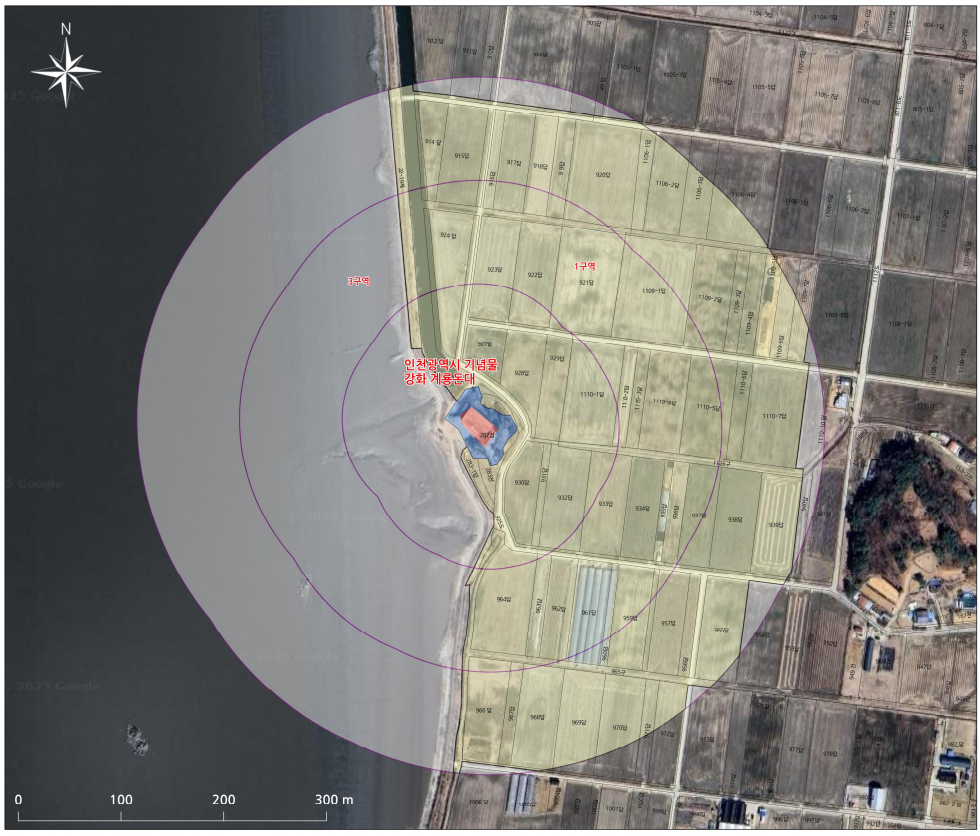
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**인천광역시 기념물**

**강화 계룡돈대**

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
황청리 282

**범 례**

- 시지정유산
- 시지정유산보호구역
- 100~300(m)
- 연속지적

| 구분 | 허용기준 | |
|---|---|---|
| | 행지동 | 정사각형(10:3 이상) |
| 1구역 | · 개별검토 | |
| 3구역 | ·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 | |
| 공통사항 | ·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개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<br>·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저탄소성 관련 시설, 발전시설(재정량 등), 등물관리시설(송서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미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토록(2000m이내에 한함)<br>·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중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결부장(지하층이 없는는 계획, 기반선이 높아산장 기준은 건축한계 이내(200m이내에 한함)<br>도로, 교량 등 이미 유사한 시설물이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결부심(200m이내에 한함)<br>· 허용기준이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 | |

| 축 척 (A3) | 1:3,000 |
|---|---|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## ■ 강화 참성단 천재궁 터

| 구분 | 기고시(2015.09.07.) | 허용기준 조정(안) |
|---|---|---|
| 고시도 |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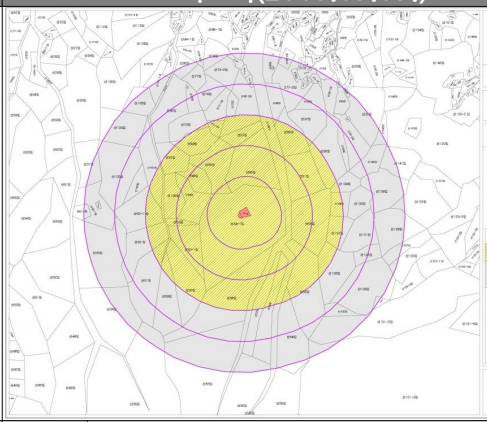 |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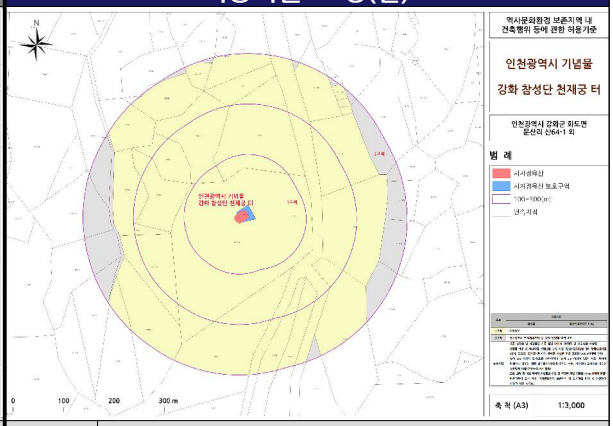 |

| 고시문 | 구분 | 허용기준 | | 구분 | 허용기준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평지붕 | 경사지붕(3:10 이상) | | 평지붕 | 경사지붕(10:3 이상) |
| | 1구역 | ◦ 원지형보존<br>- 문화재 보존·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<br>- 기존 건축물은 개축허용 | | 1구역 | ◦ 개별검토 | |
| | 그 외 지역 | 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br>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. | | 3구역 | 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 | |
| | 공통 사항 | 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.<br>◦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<br>◦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.<br>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.<br>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<br>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br>◦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br>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.<br>◦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| | 공통 사항 | 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<br>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<br>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<br>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 이내에 한함)<br>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<br>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 | |

## 허용기준 조정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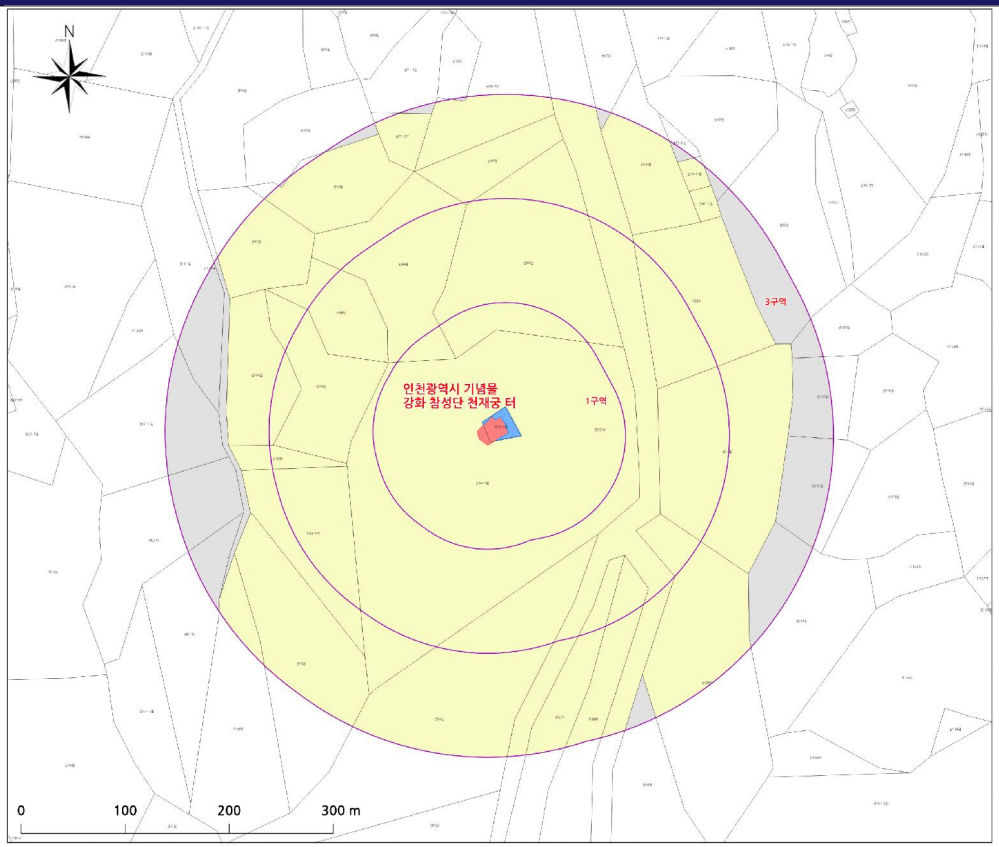
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**인천광역시 기념물**

**강화 참성단 천재궁 터**

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
문산리 산64-1 외

### 범 례

- 시지정유산
- 시지정유산 보호구역
- 100~300(m)
- 연속지적

| 구분 | 허용기준 | |
|---|---|---|
| | 평지형 | 경사지형(10:3 이상) |
| 1구역 | · 개별검토 | |
| 3구역 | ·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 | |
| 공통사항 | ·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<br>·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<br>·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(겨울철에 열리는 계재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이내에 한함)<br>·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<br>· 허용기준에 고시 제주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 | |

| 축 척 (A3) | 1:3,000 |
|---|---|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## 허용기준 조정(안) 위성영상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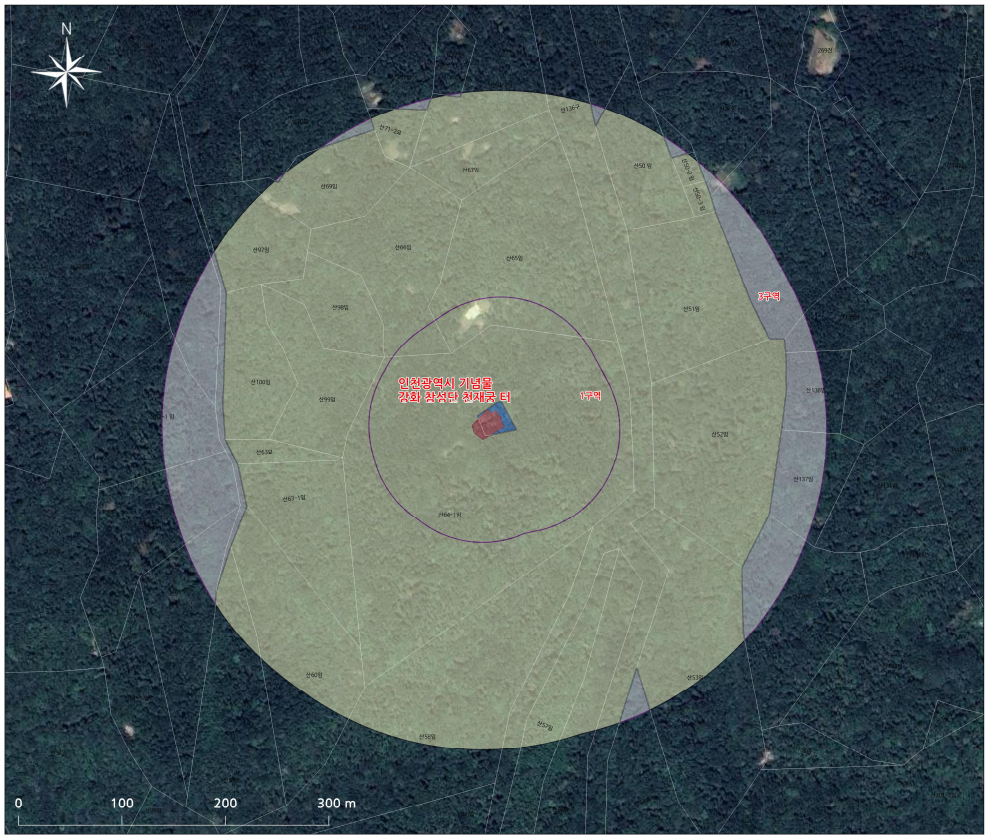
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**인천광역시 기념물**

**강화 참성단 천재궁 터**

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
문산리 산64-1 외

### 범 례

- 시지정유산
- 시지정유산보호구역
- 100~300(m)
- 연속지적

| 구분 | 허용기준 | |
|---|---|---|
| | 평지형 | 경사지형(10:3 이상) |
| 1구역 | · 개별검토 | |
| 3구역 | ·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 | |
| 공통사항 | ·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<br>·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<br>·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(겨울철에 열리는 계재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이내에 한함)<br>·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<br>· 허용기준에 고시 제주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 | |

| 축 척 (A3) | 1:3,000 |
|---|---|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## ■ 허유전 묘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 colspan="3">기고시(2015.09.07.)</th><th colspan="3">허용기준 조정(안)</th></tr>
<tr><td>고시도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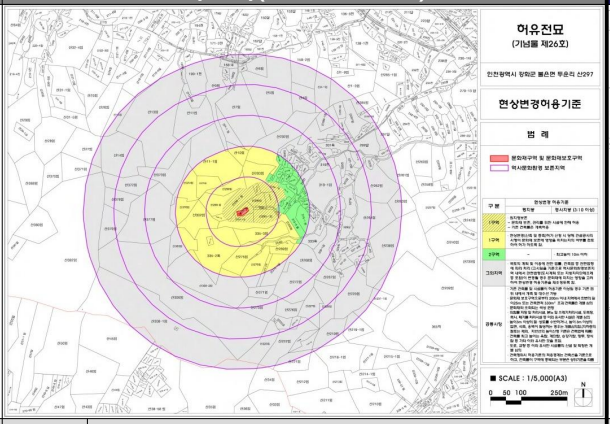
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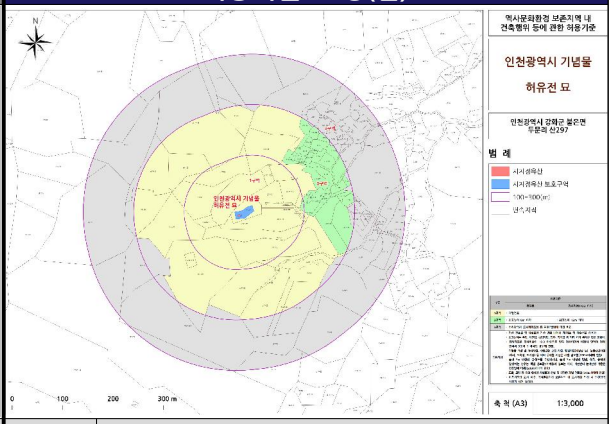
</td></tr>
<tr><td rowspan="6">고시문</td><td rowspan="2"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td rowspan="2"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/tr>
<tr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3:10 이상)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10:3 이상)</td></tr>
<tr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원지형보존<br>- 문화재 보존·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<br>- 기존 건축물은 개축허용</td><td rowspan="2">1구역</td><td colspan="2" rowspan="2">◦ 개별검토</td></tr>
<tr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현상변경(신축 및 증축) 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하도록 함</td></tr>
<tr><td>2구역</td><td>-</td><td>◦ 최고높이 10m 이하</td><td>2구역</td><td>◦ 최고높이 8m 이하</td><td>◦ 최고높이 12m 이하</td></tr>
<tr><td>그 외 지역</td><td colspan="2">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br>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.</td><td>3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/td></tr>
<tr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.<br>◦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<br>◦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.<br>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.<br>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<br>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br>◦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br>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.<br>◦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</td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<br>◦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<br>◦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<br>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<br>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<br>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 이내에 한함)<br>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<br>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</td></tr>
</table>

## 허용기준 조정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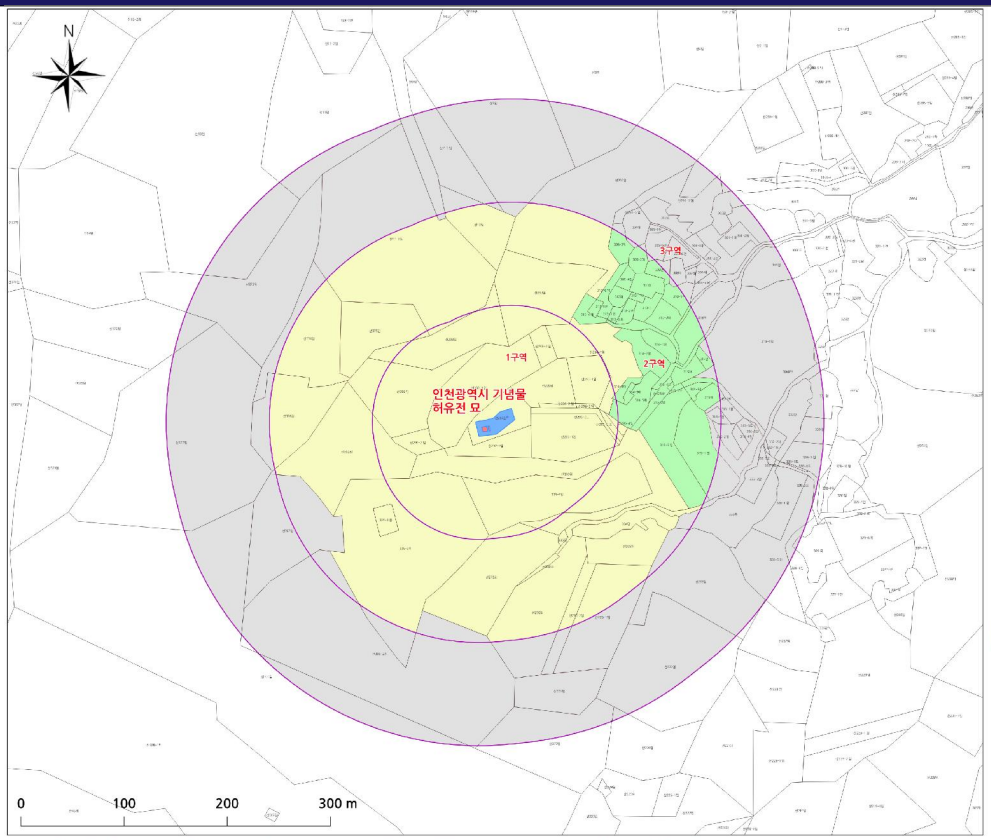
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**인천광역시 기념물**

**허유전 묘**

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
두문리 산297

### 범 례

- 시지정유산
- 시지정유산 보호구역
- 100~300(m)
- 연속지적

| 구분 | 허용기준 | |
|---|---|---|
| | 행위등 | 경사지붕(10:3 이상) |
| 1구역 | · 개별검토 | |
| 2구역 | · 최고높이 8m 이하 | · 최고높이 12m 이하 |
| 3구역 | ·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 | |
| 공통사항 | ·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과 허용함.<br>· 최고높이는 적법, 위반법, 승인기일, 생두, 생식법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<br>·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앞면 경사지면에 비율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<br>·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연순환 관련 시설, 방송시설(재난용 등), 종합관련시설(주차, 도로망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<br>· 높이 3m 이상의 절 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, 개별 검토함.(기하학적 형태는 제외, 자연선의 높이선을 기준선 건축면에 따름)(200m이내에 한함)<br>·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<br>·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접용적 시설과 사전 협의함. | |

| 축 척 (A3) | 1:3,000 |
|---|---|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## 허용기준 조정(안) 위성영상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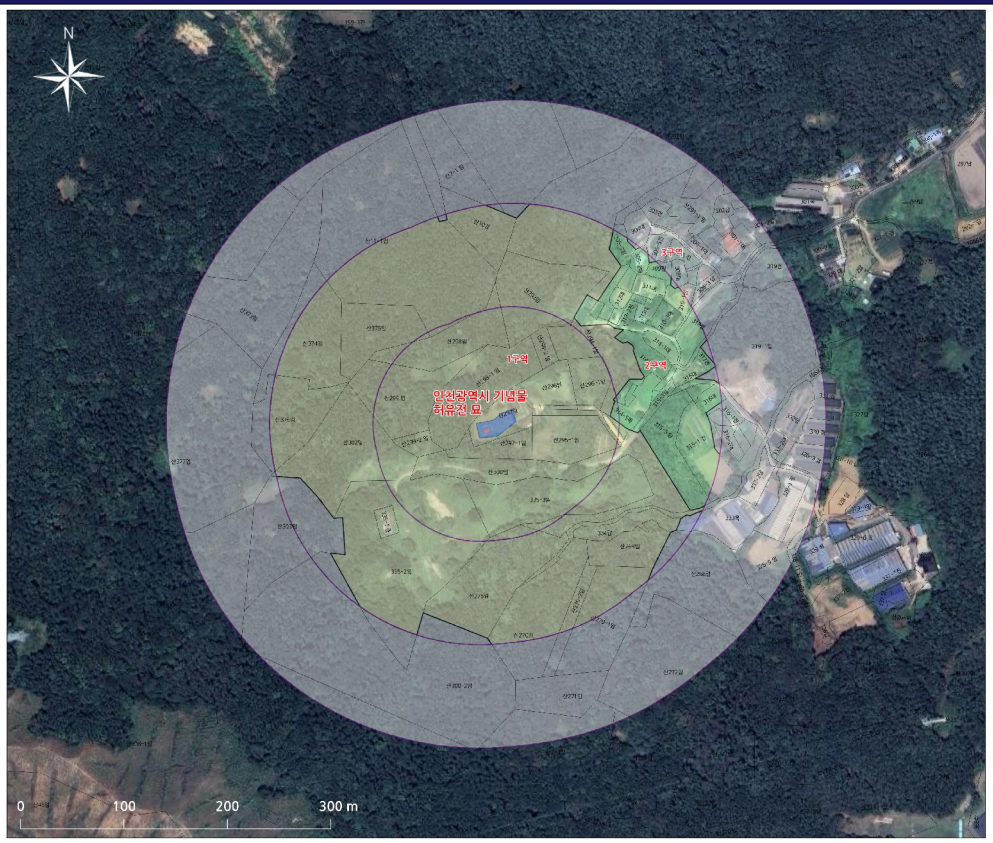
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**인천광역시 기념물**

**허유전 묘**

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
두문리 산297

### 범 례

- 시지정유산
- 시지정유산보호구역
- 100~300(m)
- 연속지적

| 구분 | 허용기준 | |
|---|---|---|
| | 행위등 | 경사지붕(10:3 이상) |
| 1구역 | · 개별검토 | |
| 2구역 | · 최고높이 8m 이하 | · 최고높이 12m 이하 |
| 3구역 | ·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 | |
| 공통사항 | ·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<br>· 최고높이는 적법, 위반법, 승인기일, 생두, 생식법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<br>·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앞면 경사지면에 비율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<br>·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연순환 관련 시설, 방송시설(재난용 등), 종합관련시설(주차, 도계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<br>·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, 개별 검토함.(기하학적 형태는 제외, 자연선의 높이선을 기준선 건축면에 따름)(200m이내에 한함)<br>·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<br>·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접용적 시설과 사전 협의함. | |

| 축 척 (A3) | 1:3,000 |
|---|---|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## ■ 강화 인산리 석실분

| 구분 | 기고시(2017.01.16.) | 허용기준 조정(안) |
|---|---|---|
| 고시도 |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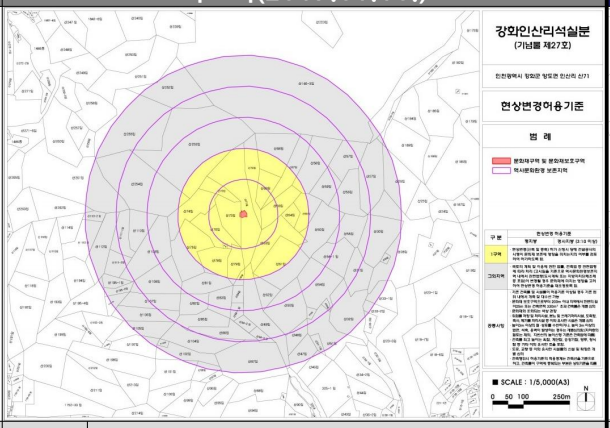 |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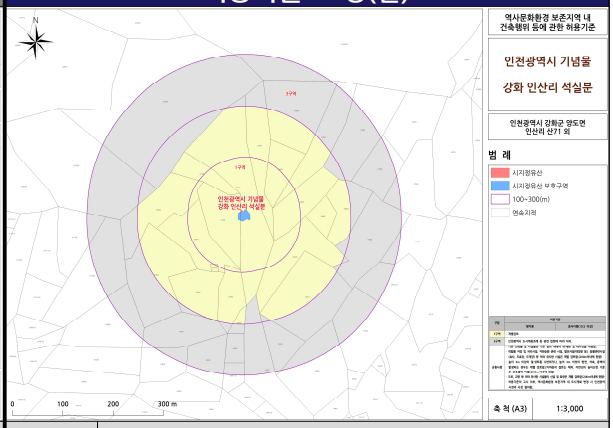 |

| 고시문 | 구분 | 허용기준 | | 구분 | 허용기준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평지붕 | 경사지붕(3:10 이상) | | 평지붕 | 경사지붕(10:3 이상) |
| | 1구역 | ◦ 현상변경(신축 및 증축) 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하도록 함 | | 1구역 | ◦ 개별검토 | |
| | 그 외 지역 | 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br>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. | | 3구역 | 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 | |
| | 공통 사항 | 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.<br>◦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<br>◦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.<br>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.<br>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<br>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br>◦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br>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.<br>◦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| | 공통 사항 | 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<br>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<br>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<br>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 이내에 한함)<br>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<br>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 | |

## 허용기준 조정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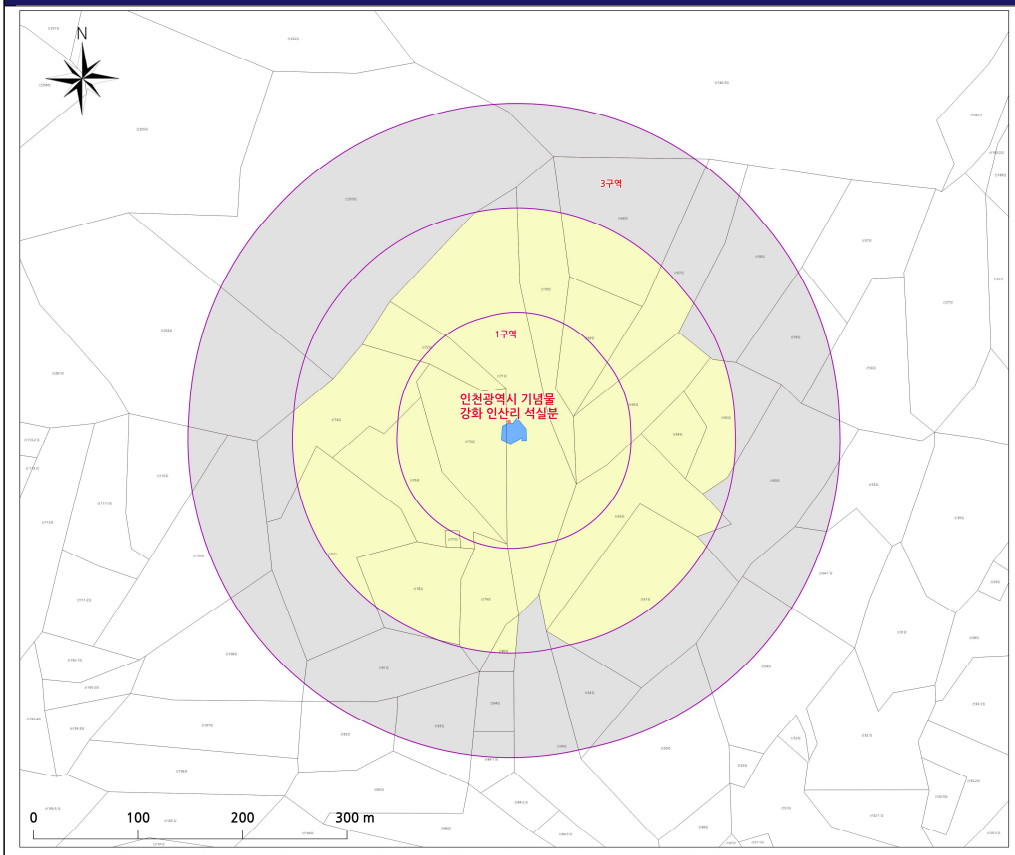
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**인천광역시 기념물**

**강화 인산리 석실분**

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
인산리 산71 외

### 범 례

- 시지정유산
- 시지정유산 보호구역
- 100~300(m)
- 연속지적

| 구분 | 허용기준 | |
|---|---|---|
| | 행위명 | 영사지붕(10:3 이상) |
| 1구역 | 개별검토 | |
| 3구역 |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 | |
| 운용사항 |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법위 내에서 개개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<br>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(공간200m이내에 한함)<br>높이 3m 이상의 절삭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중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(지하층의 설치는 제외, 지면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이내에 한함)<br>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<br>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경과 사전 협의함. | |

| 축 척 (A3) | 1:3,000 |
|---|---|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## 허용기준 조정(안) 위성영상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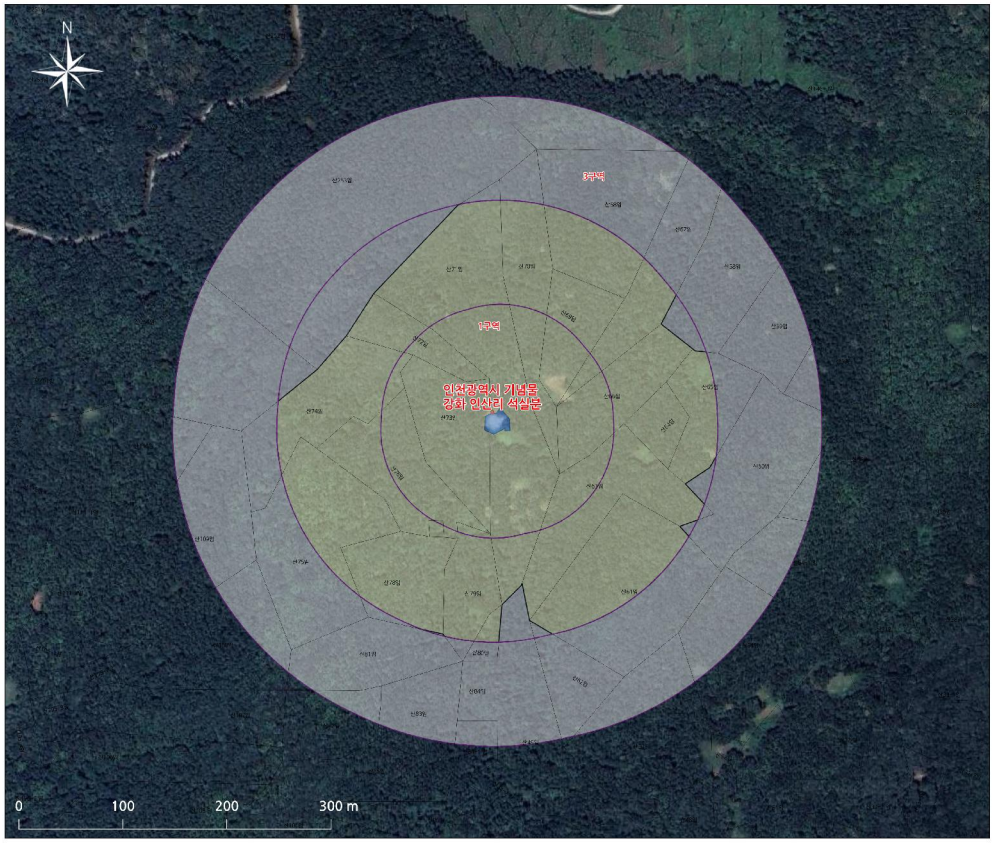
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**인천광역시 기념물**

**강화 인산리 석실분**

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
인산리 산71 외

### 범 례

- 시지정유산
- 시지정유산보호구역
- 100~300(m)
- 연속지적

| 구분 | 허용기준 | |
|---|---|---|
| | 행위명 | 영사지붕(10:3 이상) |
| 1구역 | 개별검토 | |
| 3구역 |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br>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법위 내에서 개개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<br>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(공간200m이내에 한함)<br>높이 3m 이상의 절삭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중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(지하층의 설치는 제외, 지면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이내에 한함)<br>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<br>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경과 사전 협의함. | |
| 운용사항 | | |

| 축 척 (A3) | 1:3,000 |
|---|---|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## ■ 강화 건평돈대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기고시(2017.01.16.)</th><th>허용기준 조정(안)</th></tr>
<tr><td>고시도</td><td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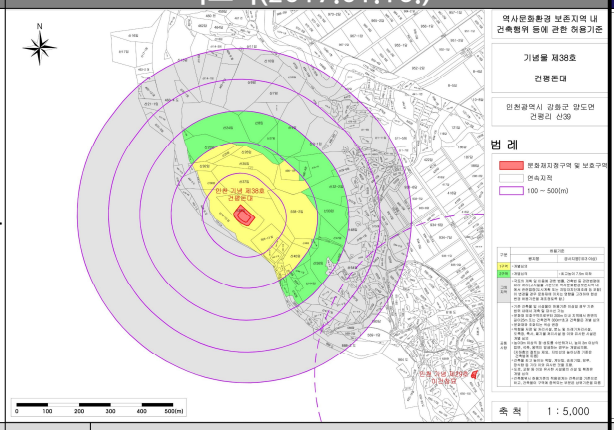
</td><td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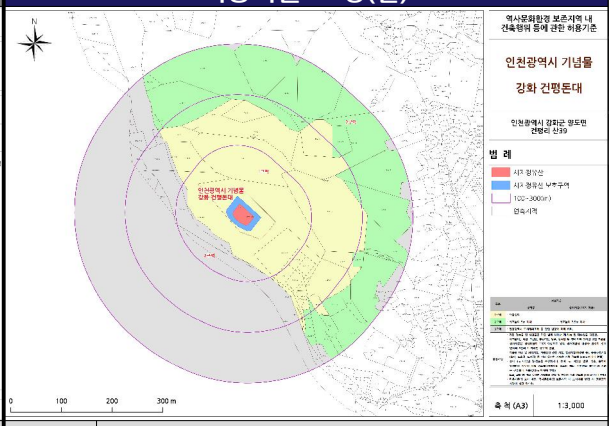
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고시문</td><td>구분</td><td>허용기준<br>평지붕 | 경사지붕(3:10 이상)</td><td>구분</td><td>허용기준<br>평지붕 | 경사지붕(10:3 이상)</td></tr>
<tr><td>1구역</td><td>◦ 개별심의</td><td>1구역</td><td>◦ 개별검토</td></tr>
<tr><td>2구역</td><td>◦ 개별심의<br>◦ 최고높이 7.5m 이하</td><td>2구역</td><td>◦ 최고높이 5m 이하<br>◦ 최고높이 7.5m 이하</td></tr>
<tr><td>그 외 지역</td><td>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br>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.</td><td>3구역</td><td>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/td></tr>
<tr><td>공통 사항</td><td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.<br>◦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<br>◦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.<br>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.<br>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<br>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br>◦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br>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.<br>◦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</td><td>공통 사항</td><td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<br>◦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<br>◦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<br>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<br>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<br>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 이내에 한함)<br>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<br>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</td></tr>
</table>

## 허용기준 조정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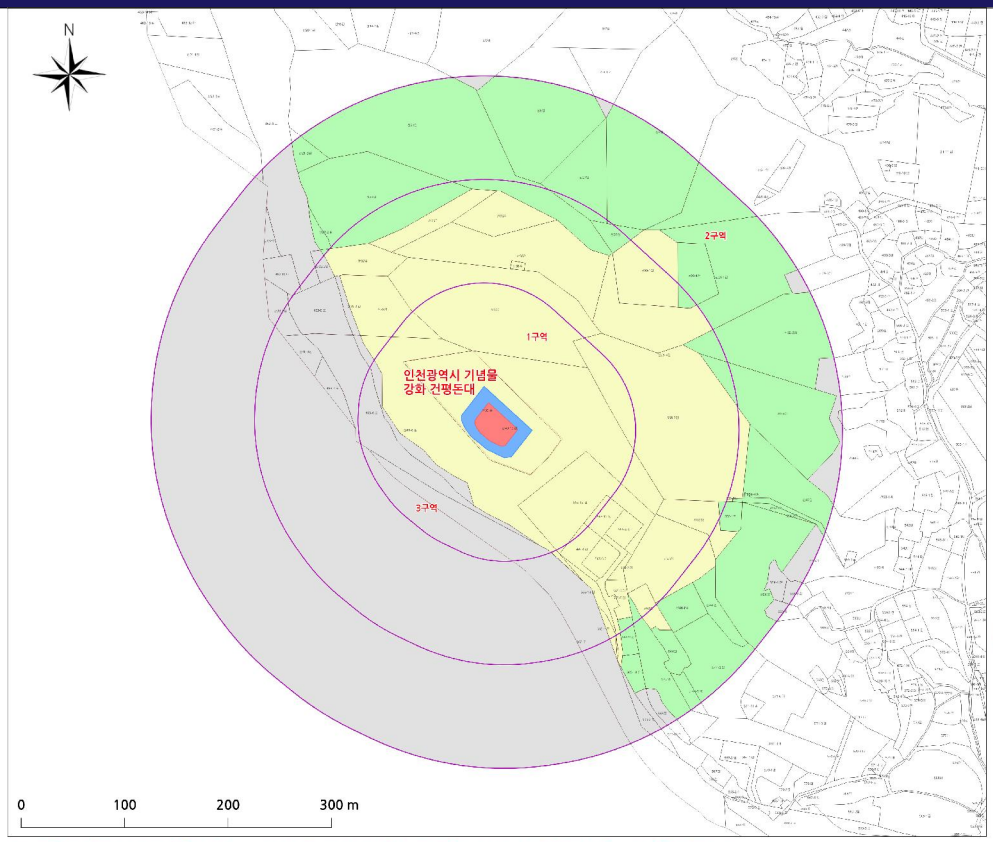
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**인천광역시 기념물**

**강화 건평돈대**

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
건평리 산39

### 범 례

- 시지정유산
- 시지정유산 보호구역
- 100~300(m)
- 연속지적

| 구분 | 허용기준 | |
|---|---|---|
| | 원지형 | 경사지형(10:3 이상) |
| 1구역 | · 개별 입목 | |
| 2구역 | · 최고높이 5m 이하 | · 최고높이 7.5m 이하 |
| 3구역 | ·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. | |
| 공통사항 | ·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입목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<br>· 최고높이는 축전, 개인전, 순간기탁, 장례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포함됨.<br>· 경사지형은 경사지형에 10:3 미만으로 장례 경사지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<br>·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제외), 종합관리시설(매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입목로(200m이내에 한함)<br>·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옹벽, 석축, 공작물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입목로(지하층의 경로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이내에 한함)<br>· 도로, 교량 등 이미 유사한 시설물이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입목로(200m이내에 한함)<br>·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접장벽 시설과 사전 협의함. | |

| 축 척 (A3) | 1:3,000 |
|---|---|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## 허용기준 조정(안) 위성영상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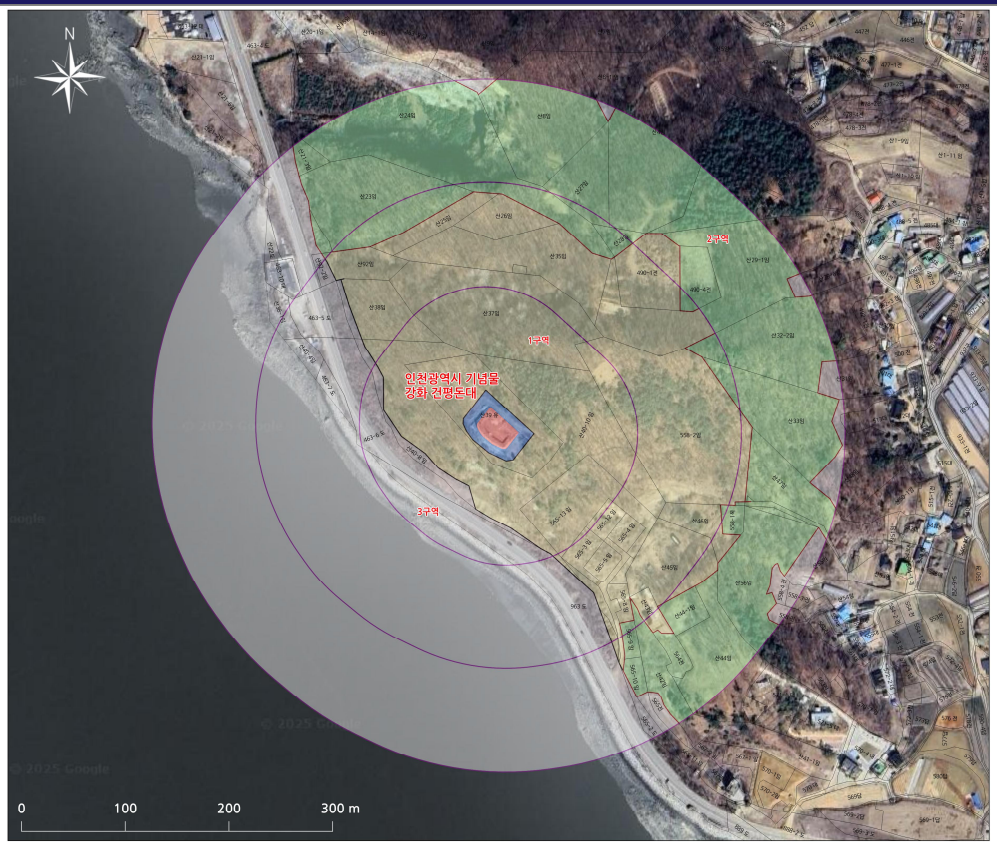
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**인천광역시 기념물**

**강화 건평돈대**

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
건평리 산39

### 범 례

- 시지정유산
- 시지정유산보호구역
- 100~300(m)
- 연속지적

| 구분 | 허용기준 | |
|---|---|---|
| | 원지형 | 경사지형(10:3 이상) |
| 1구역 | · 개별 입목 | |
| 2구역 | · 최고높이 5m 이하 | · 최고높이 7.5m 이하 |
| 3구역 | ·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. | |
| 공통사항 | ·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입목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<br>· 최고높이는 축전, 개인전, 순간기탁, 장례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포함됨.<br>· 경사지형은 경사지형에 10:3 미만으로 장례 경사지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<br>·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제외), 종합관리시설(매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입목로(200m이내에 한함)<br>·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옹벽, 석축, 공작물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입목로(지하층의 경로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이내에 한함)<br>· 도로, 교량 등 이미 유사한 시설물이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입목로(200m이내에 한함)<br>·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접장벽 시설과 사전 협의함. | |

| 축 척 (A3) | 1:3,000 |
|---|---|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## ■ 강화 원층사 터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 colspan="3">기고시(2015.09.07.)</th><th colspan="3">허용기준 조정(안)</th></tr>
<tr><td>고시도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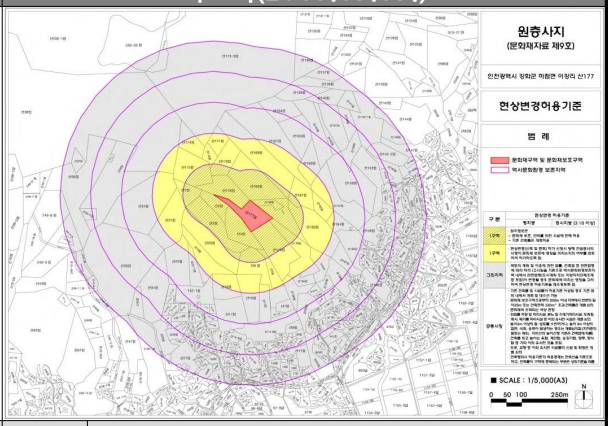
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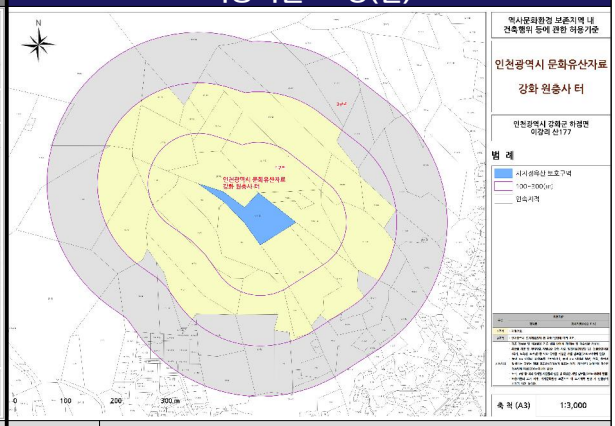
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고시문</td><td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td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/tr>
<tr><td>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3:10 이상)</td><td>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10:3 이상)</td></tr>
<tr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원지형보존<br>- 문화재 보존·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<br>- 기존 건축물은 개축허용</td><td rowspan="2">1구역</td><td colspan="2" rowspan="2">◦ 개별검토</td></tr>
<tr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현상변경(신축 및 증축) 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하도록 함</td></tr>
<tr><td>그 외 지역</td><td colspan="2">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br>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.</td><td>3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/td></tr>
<tr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.<br>◦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<br>◦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.<br>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.<br>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<br>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br>◦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br>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.<br>◦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</td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<br>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<br>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<br>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 이내에 한함)<br>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<br>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</td></tr>
</table>

## 허용기준 조정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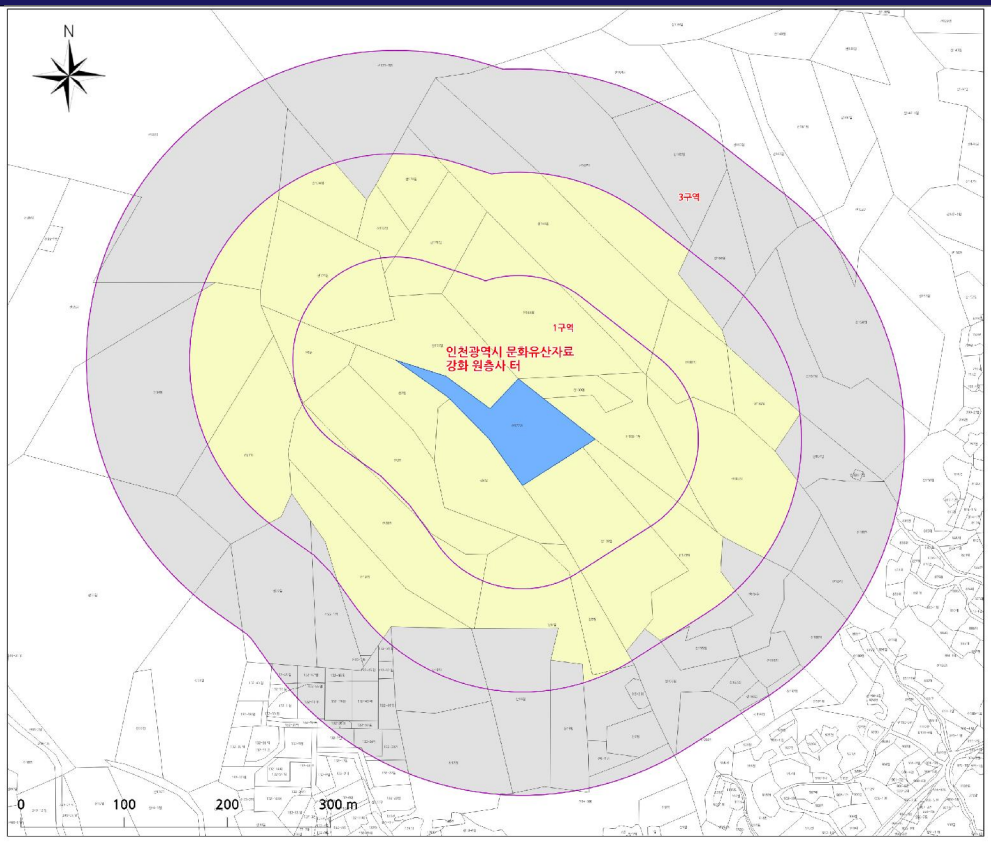
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**인천광역시 문화유산자료**

**강화 원층사 터**

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
이강리 산177

### 범 례

- 시지정유산 보호구역
- 100~300(m)
- 연속지적

| 구분 | 허용기준 | |
|---|---|---|
| | 현시점 | 검사지침(10.3 이전) |
| 1구역 | · 개별검토 | |
| 3구역 | ·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 | |
| 공통사항 | ·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체조 및 대수선을 허용함.<br>· 취락을 저장 및 처리시설, 재한슬한 관련 시설, 정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미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로 (200m이내에 한함)<br>· 높이 3m 이상의 옹 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토석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로 (가)에서의 결과는 제외, 지반변이 놓아선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(200m이내에 한함)<br>· 도로, 교량 등 이미 유사한 시설물이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로(200m이내에 한함)<br>· 비용기준이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의 사전 협의함. | |

| 축 척 (A3) | 1:3,000 |
|---|---|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## 허용기준 조정(안) 위성영상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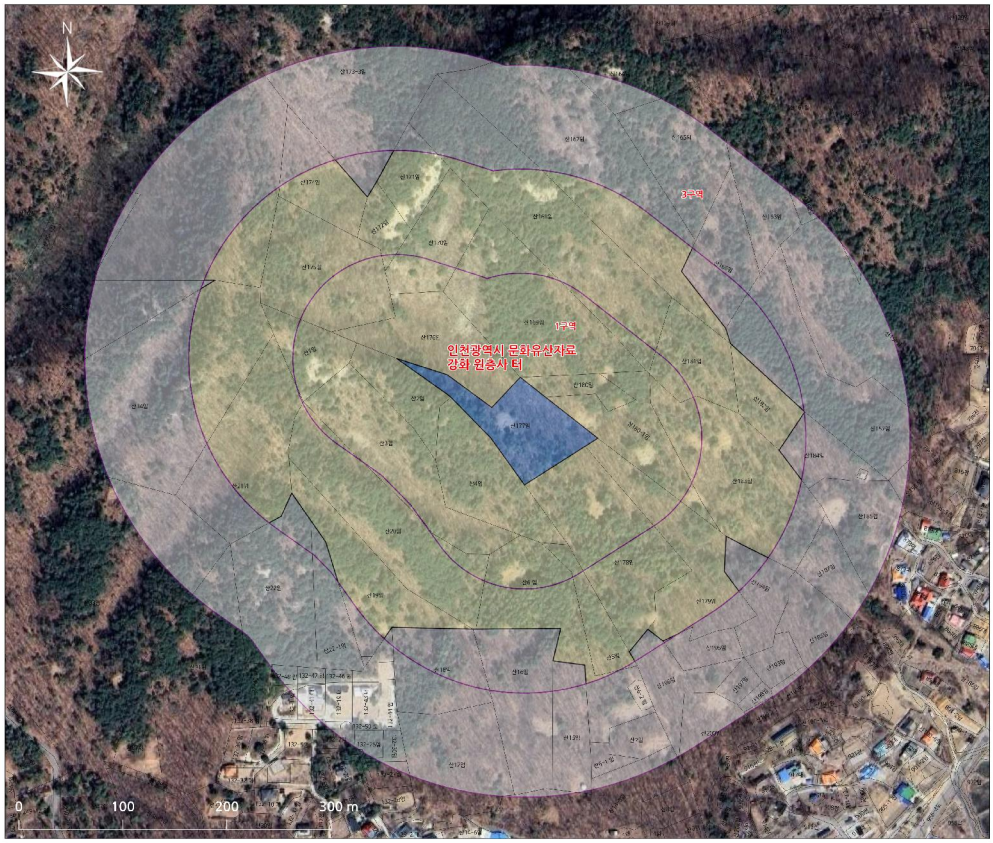
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**인천광역시 문화유산자료**

**강화 원층사 터**

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
이강리 산177

### 범 례

- 시지정유산보호구역
- 100~300(m)
- 연속지적

| 구분 | 허용기준 | |
|---|---|---|
| | 현시점 | 검사지침(10.3 이전) |
| 1구역 | 개별검토 | |
| 3구역 |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 | |
| 공통사항 |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체조 및 대수선을 허용함.<br>취락을 저장 및 처리시설, 재한슬한 관련 시설, 정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미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로(200m이내에 한함)<br>높이 3m 이상의 옹 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토석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로(가)에서의 결과는 제외, 지반변이 놓아선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(200m이내에 한함)<br>도로, 교량 등 이미 유사한 시설물이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로(200m이내에 한함)<br>비용기준이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의 사전 협의함. | |

| 축 척 (A3) | 1:3,000 |
|---|---|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## ■ 강화 망월돈대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 colspan="3">기고시(2017.01.16.)</th><th colspan="3">허용기준 조정(안)</th></tr>
<tr><td>고시도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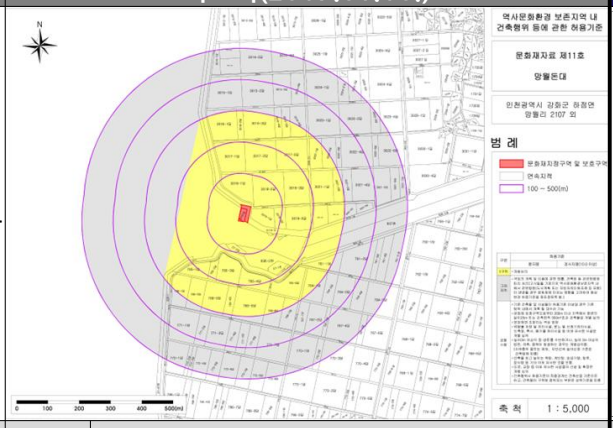
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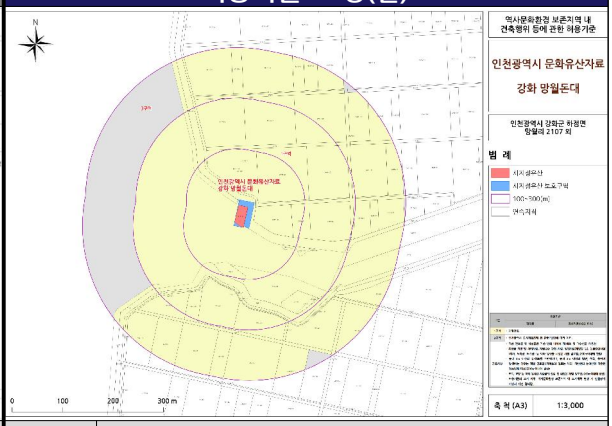
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고시문</td><td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td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/tr>
<tr><td>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3:10 이상)</td><td>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10:3 이상)</td></tr>
<tr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개별심의</td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개별검토</td></tr>
<tr><td>그 외 지역</td><td colspan="2">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br>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 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.</td><td>3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/td></tr>
<tr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.<br>◦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<br>◦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.<br>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.<br>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<br>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br>◦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br>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.<br>◦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</td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<br>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<br>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<br>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 이내에 한함)<br>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<br>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</td></tr>
</table>

## 허용기준 조정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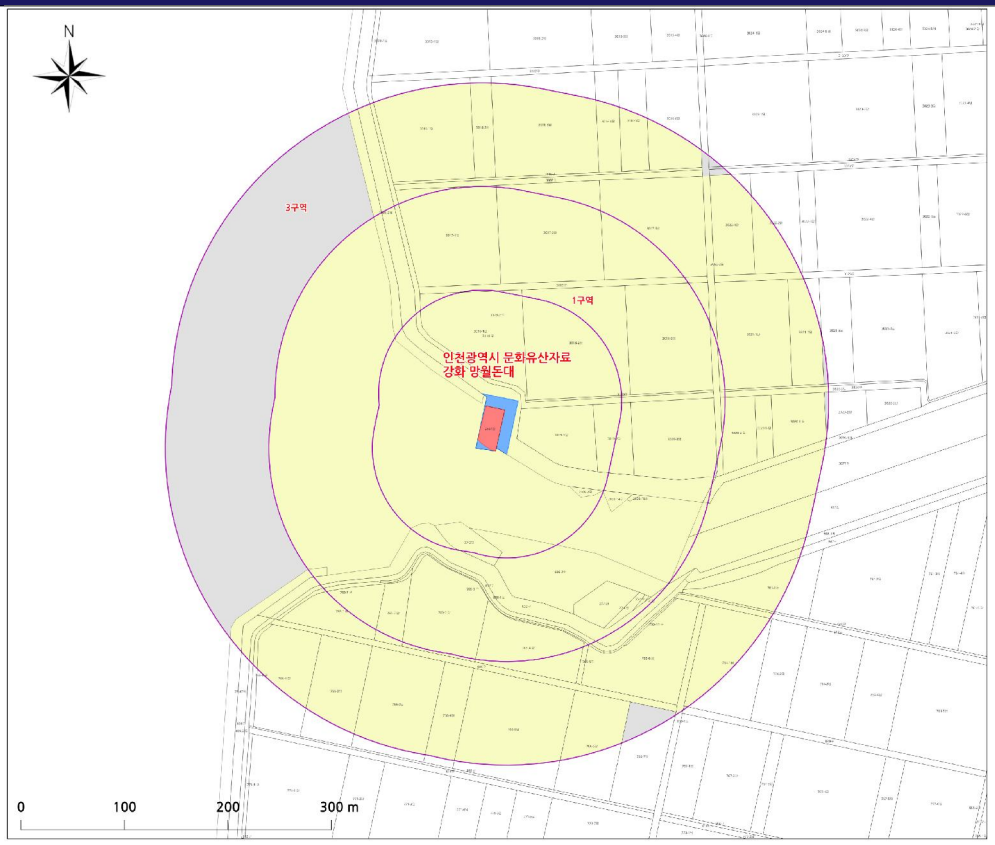
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**인천광역시 문화유산자료**

**강화 망월돈대**

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
망월리 2107 외

### 범 례

- 시지정유산
- 시지정유산 보호구역
- 100~300(m)
- 연속지적

| 구분 | 허용기준 | |
|---|---|---|
| | 원지형 | 경사지형(10:3 이상) |
| 1구역 | 개발검토 | |
| 3구역 |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 | |
| 공통사항 |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면적 내에서 개·증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<br>·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등등관련사업(폐시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<br>·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옹벽, 석축, 흙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됨.(가옥을의 경우는 제외. 지반선에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이내에 한함)<br>·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에 한함)<br>· 허용기준에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접용적 시점과 사전 협의함. | |

| 축 척 (A3) | 1:3,000 |
|---|---|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## 허용기준 조정(안) 위성영상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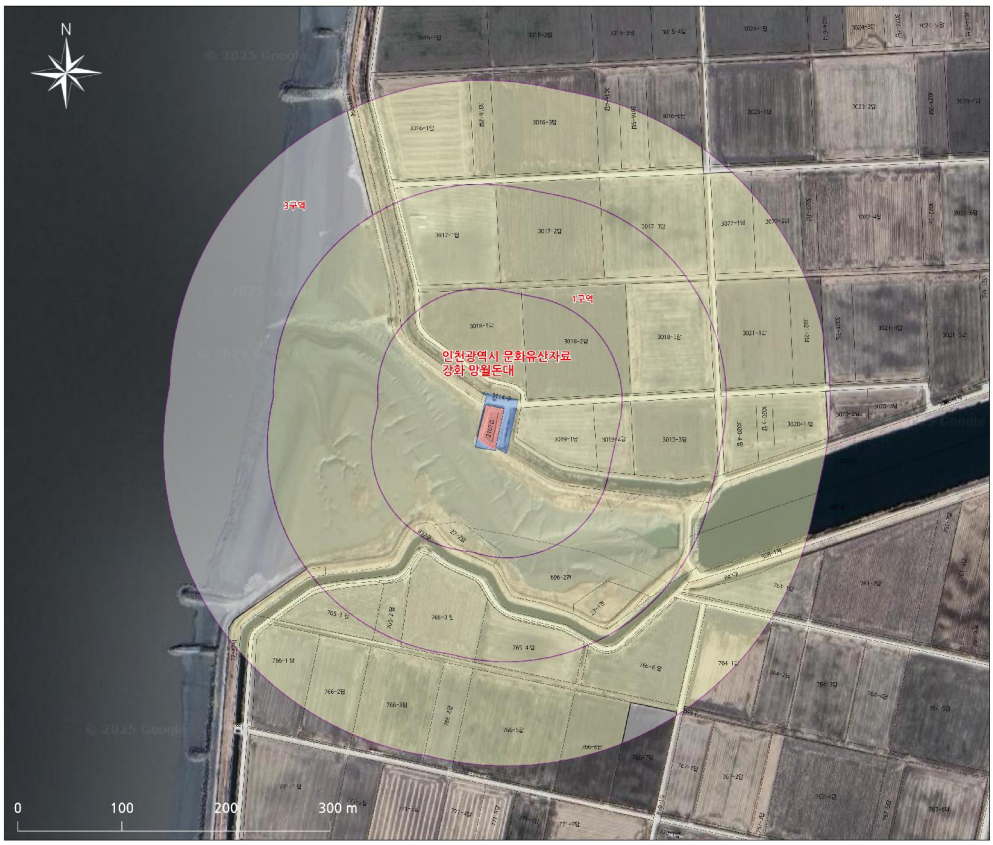
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**인천광역시 문화유산자료**

**강화 망월돈대**

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
망월리 2107 외

### 범 례

- 시지정유산
- 시지정유산 보호구역
- 100~300(m)
- 연속지적

| 구분 | 허용기준 | |
|---|---|---|
| | 원지형 | 경사지형(10:3 이상) |
| 1구역 | 개발검토 | |
| 3구역 |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 | |
| 공통사항 |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면적 내에서 개·증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<br>·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등등관련사업(폐시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됨.(200m이내에 한함)<br>·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옹벽, 석축, 흙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됨.(가옥을의 경우는 제외. 지반선에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이내에 한함)<br>·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됨.(200m이내에 한함)<br>· 허용기준에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접용적 시점과 사전 협의함. | |

| 축 척 (A3) | 1:3,000 |
|---|---|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## ■ 강화 무태돈대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 colspan="3">기고시(2017.01.16.)</th><th colspan="3">허용기준 조정(안)</th></tr>
<tr><td>고시도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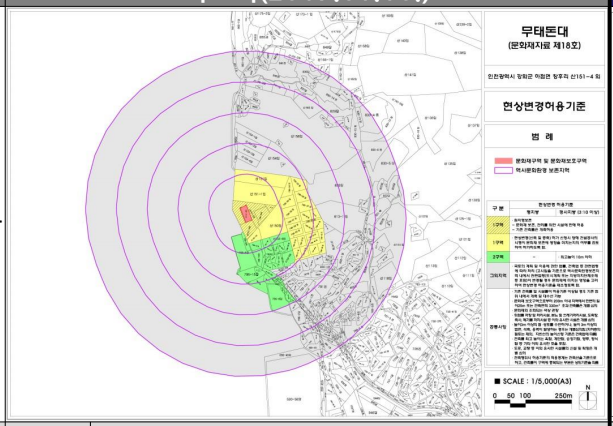
</td><td colspan="3"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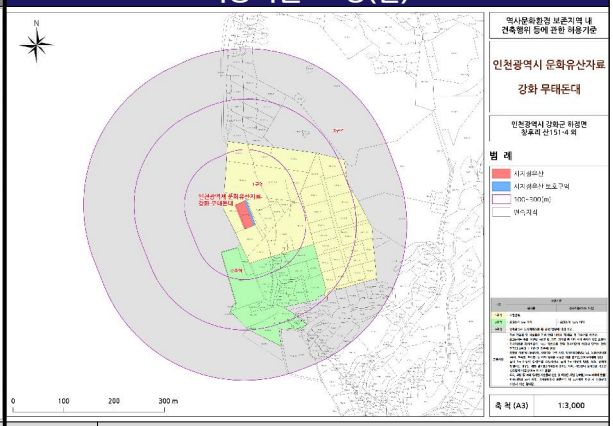
</td></tr>
<tr><td rowspan="6">고시문</td><td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td>구분</td><td colspan="2">허용기준</td></tr>
<tr><td>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3:10 이상)</td><td></td><td>평지붕</td><td>경사지붕(10:3 이상)</td></tr>
<tr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원지형보존<br>- 기존 건축물의 개축 허용<br>- 문화재 보존·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,</td><td rowspan="2">1구역</td><td colspan="2" rowspan="2">◦ 개별검토</td></tr>
<tr><td>1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현상변경(신축 및 증축) 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하도록 함</td></tr>
<tr><td>2구역</td><td>-</td><td>◦ 최고높이 10m 이하</td><td>2구역</td><td>◦ 최고높이 8m 이하</td><td>◦ 최고높이 12m 이하</td></tr>
<tr><td>그 외 지역</td><td colspan="2">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br>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.</td><td>3구역</td><td colspan="2">◦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</td></tr>
<tr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.<br>◦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<br>◦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.<br>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.<br>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<br>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br>◦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br>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.<br>◦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</td><td>공통 사항</td><td colspan="2">◦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<br>◦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<br>◦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<br>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<br>◦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<br>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 이내에 한함)<br>◦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 이내에 한함)<br>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.</td></tr>
</table>

## 허용기준 조정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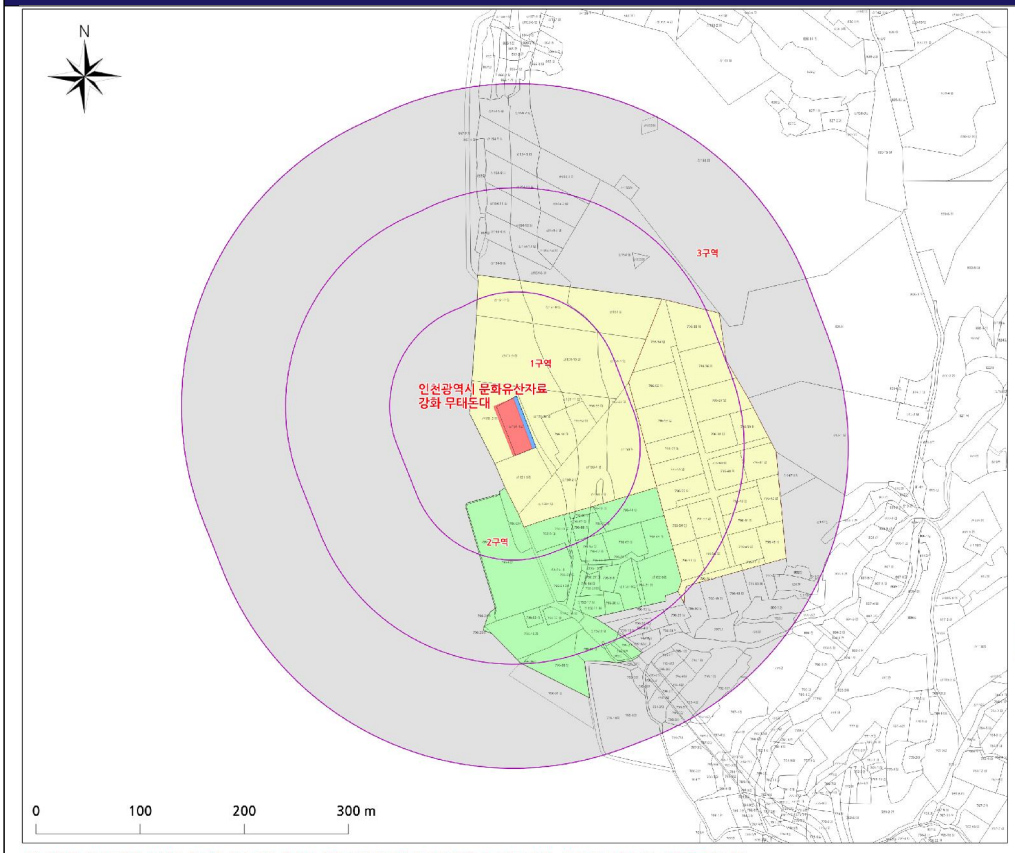
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**인천광역시 문화유산자료**

**강화 무태돈대**

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
창후리 산151-4 외

### 범 례

- 시지정유산
- 시지정유산 보호구역
- 100~300(m)
- 연속지적

| 구분 | 허용기준 | |
|---|---|---|
| | 평지형 | 경사지형(10:3 이상) |
| 1구역 | 개별검토 | |
| 2구역 | 최고높이 8m 이하 | 최고높이 12m 이하 |
| 3구역 |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 | |
| 공통사항 | ·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<br>·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장주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<br>· 경사지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경북 경사비율서 비교시 변적이 전체 변적의 절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<br>·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개인송유관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소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(200m이내 원형 한정)<br>·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벽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(지하층이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이내 원형 한정)<br>·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 원형 한정)<br>·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 사연과 사전 협의함. | |

| 축 척 (A3) | 1:3,000 |
|---|---|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## 허용기준 조정(안) 위성영상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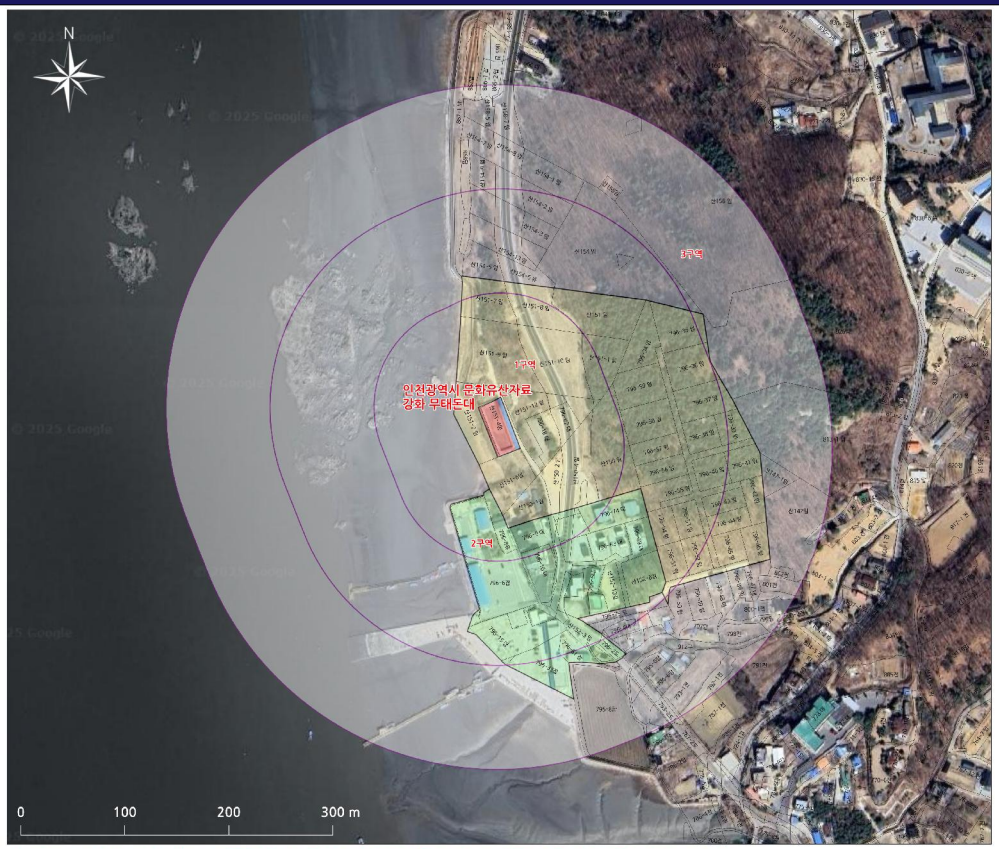
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**인천광역시 문화유산자료**

**강화 무태돈대**

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
창후리 산151-4 외

### 범 례

- 시지정유산
- 시지정유산 보호구역
- 100~300(m)

| 구분 | 허용기준 | |
|---|---|---|
| | 평지형 | 경사지형(10:3 이상) |
| 1구역 | 개별검토 | |
| 2구역 | 최고높이 8m 이하 | 최고높이 12m 이하 |
| 3구역 |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. | |
| 공통사항 | ·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.<br>·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장주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<br>· 경사지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경북 경사비율서 비교시 변적이 전체 변적의 절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<br>·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개인송유관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관련시설(소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 원형 한정)<br>·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벽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(지하층이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(200m이내 원형 한정)<br>·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(200m이내 원형 한정)<br>·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 사연과 사전 협의함. | |

| 축 척 (A3) | 1:3,000 |
|---|---|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[붙임 2]

#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및 조정(안) 의견서

□ **의견 제출자**

○ 주소 :

○ 성명(법인, 단체명) :

○ 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 :

○ 연락처 :

□ **의견 내용**

| |
|---|
| ○ 대상유산<br>-<br><br>○ 의견사항<br>- |

상기 본인은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(안)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

2025. . .

**의견제출자 : (인)**

**인천광역시장 귀하**